



볼리비아 다민족 국가

바다의 책

| 2014 |

바다의 책

볼리비아 대외협력부/볼리비아 외무부

전략적해양변호부

편집: 전략적해양변호부

내지: 미구엘 알란디아 뽀또아 화가의 외무부 정문에 있는 사진

2차 교정: 2014년 8월

납본: 4-1-180-14 P.O.

ISBN(ENG):978-99974-41-71-3

이 책 내용의 부분 또는 전체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볼리비아 라빠스

목차

1. 볼리비아 해양 주권에 대한 역사적 해설 및 상실

페루 부왕령과 차르카스의 왕립심의원

리오데라쁠라따 부왕령 및 차르카스 왕립심의원

볼리비아 독립(1825)

리또랄 지역의 탄생(1829)

볼리비아 해안 지위에 대한 인정

페루의 볼리비아 해양 영토 침략

볼리비아와 칠레의 국경 조약(1866년과 1874년)

1877년 쓰나미로 인한 10% 세금 부과

칠레의 볼리비아 침략과 태평양 전쟁

1884년 정전협정

아브라암 꼬니그의 문서

1904년 협약

2. 볼리비아와 해양주권 협상 중 다짐한 칠레의 약속

1895년 협약

파리회의 및 국제동맹(1919-1922)

1920 1월 10일 법령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팔마 대통령의 성명서(1922)

루이스 이스끼에르도 외무부 장관의 문서(1923)

미구엘 그루차가 대사의 제안(1926)

벨뜨란 마디에우 외무부 장관의 제안서(1926)

켈로그 장관의 제안에 대한 호르헤 마떼 외무부 장관의 답변(1926)

볼리비아를 타겟으로 한 1929 리마 협정과 부속서의정서

1950년 합의와 기록교환

마누엘 프루코 대사의 제안서(1961)

차라냐 협상에 따른 시도(1975-1978)

미주기구에서의 칠레의 약속(1979-1983)

“신선한 접근” 협상(1986-1987)

예외 없는 의제(2000)

메사 대통령과 라고스 대통령간의 논의(2003-2004)
아메리카 몬트레이 정상회의(2004)
로드리게스 벨트세 대통령과 라고스 대통령 회담(2005)
13개 중점 의제(2006)
가장 최근의 대화 시도(2010-2011)

3. 볼리비아와 해양주권 협상을 진행한 칠레 대통령, 외무부 장관, 대사

아니발 뵘뎬 - 대통령 (1876 - 1881)
도밍고 산타 마리아 - 외무부 장관 (1879 - 1880)이자 후에 대통령 (1881 - 1886)
호세 몬트 - 대통령 (1891 - 1896)
루이스 바로스 보르고뇨 - 외무부 장관 (1894 - 1895)
후안 루이스 산우엔떼스 - 대통령 (1915 - 1920)
에밀리오 벨로 꼬데시도 - 라빠스 칠레 전권 장관 (1920)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팔마 - 대통령 (1920 - 1924)
루이스 이스끼에르도 - 외무부 장관 (1922-1923)
에밀리아노 빠구에로아 라라인 - 대통령 (1925-1927)
벨트란 마띠에우 - 외무부 장관 (1925 - 1926)
호르헤 마떼 - 외무부 장관 (1926 - 1927)
가브리엘 곤살레스 비델라 - 대통령 (1946 - 1952)
오라시오 워커 라라인 - 외무부 장관 (1950 - 1951)
호르헤 알레산드리 로드리게스 - 대통령 (1958 - 1964)
마누엘 트루코 - 라빠스의 칠레 대사 (1961)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 대통령 (1973 - 1990)
빠뜨리시오 까르바알 - 외무부 장관 (1974 - 1978)
미구엘 슈웨이저 - 외무부 장관 (1983)

최근 칠레 정부와 볼리비아에 대한 입장(1990 - 2014)

빠뜨리시오 아일윈 - 대통령 (1990 - 1994)
에두아르도 후레이 - 대통령 (1994 - 2000)
리카르도 라고스 - 대통령 (2000 - 2006)
미첼 바첼레트 - 대통령 (2006 - 2010)

세바스티안 베네라 - 대통령 (2010 - 2014)

4.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볼리비아의 해양주권 요구

국제법정 제소에 대한 볼리비아의 결정

해양보호위원회와 전략적해양보호부 설치

전직 대통령과 전직 외무부 장관들과의 협의

신청서 작성

대리인 지명

신청서 제출하기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 및 재판권

해안 주권 주장의 법률적 근거

신청서 제출

서면답변 제출 시한 확정

볼리비아 소송 취의서 접수

볼리비아 해양주권 주장에 대한 지지

해양주권 요구에 대한 국제적 입장

전략적해양보호부 사무총장 비준(2014)

미주기구 회의에서의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성명서(2014)

5. 고립으로 인한 결과

1879년 칠레의 침략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자원의 손실

구아노와 초석

은

구리

리튬

해양자원

자유통행제도

아리카와 안토빠가스따 항구에서 제한된 관세 자주권

항만서비스의 독점

항구에서 위험 화물(IMO) 보관 비용

수송 중인 볼리비아 화물에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세금 부과
볼리비아 화물을 안토빠가스따와 이끼께 외부 부지 배치로 비용 증가 발생
아리까 - 라빠스 철로 운행 중단
고립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수입 수준
해외무역
운송비용
외국인 투자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에 따른 그 외 결과
인간 개발 지표

6. 연대표

7. 부속서

- 부속서1. 칠레와 볼리비아 국경 조약 (1866년 8월 10일)
- 부속서2. 볼리비아와 칠레 국경 조약 (1874년 8월 6일)
- 부속서3. 볼리비아와 칠레 정전 협정 (1884년 4월 4일)
- 부속서4. 볼리비아와 칠레 영토양도조약 (1895년 5월 18일)
- 부속서5. 칠레와 볼리비아 평화우호조약 (1904년 10월 20일)
- 부속서6. 1920년 1월 10일 보충협약 회의록
- 부속서7. 프랭크 켈로그 국무장관 제안서 (1926년 11월 30일)
- 부속서8. 프랭크 켈로그 미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호르헤 마떼 칠레 수상의 제안서
(1926년 12월 4일)
- 부속서9. 볼리비아 대사 문서 529/21호 (1950년 6월 1일)
- 부속서10. 칠레 외무부 문서 9호 (1950년 6월 20일)
- 부속서11. 칠레 제안서 (1961년 7월 10일)
- 부속서12. 볼리비아와 칠레 차라냐 공동선언 (1975년 2월 8일)
- 부속서13. 칠레 외무부 장관 문서 686호 (1975년 12월 19일)
- 부속서14. 페루 외무부 성명 30-76 호

부속서15. 미주기구 결의안 426호 (1979년 10월 31일 채택)

부속서16. 미주기구 결의안 686호 (1983년 11월 18일 채택)

부속서17. 칠레와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보도자료 (2000년 2월 22일)

부속서18. 제15차 볼리비아-칠레 정치적 협의 메커니즘 회의록 (2006년 11월 25일)

부속서19.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취의서

부속서20. 바다의 날, 에모 모랄레스 대통령 연설문 (2014년 3월 23일)

부속서21. 미주기구에서 다비드 초께우안까 외무부 장관 연설문 (2014년 6월 4일)

사진출처

“볼리비아는 바다에서 고립되어 살 수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태평양에 최소 항구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 문제가 제기될 때면 대책을 마련하여 볼리비아 존재의 바로 토대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

다니엘 산체스 부스타만떼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1910년 4월 22일

“우리가 볼리비아를 질식시킬 수 없음을 한 순간도 잊지 맙시다. 안또빠가스따와 로아강까지 이어지는 해양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는 우리 칠레는 허가 요청 없이 안전하게 내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항구와 함께 이 지역을 개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볼리비아를 말살할 수도, 말살해서도 안 됩니다.”

도밍고 산타 마리아

칠레 외무부 장관, 1879년 11월 22일

소개

1825년 독립할 때 볼리비아는 400 킬로미터에 달하는 태평양의 해안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0년 후 1879년 칠레가 쳐들어와 볼리비아의 리또랄 지역을 강탈함으로써, 볼리비아는 약 1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영토와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역사의 전 과정에서 볼리비아가 부딪혀야 했던 전쟁 같은 대화재나 국제적인 논쟁도 볼리비아가 해양 주권을 빼앗겨 지정학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의 시나리오에서 필수적인, 태평양에서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감을 상실한 만큼의 상당한 상실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칠레는 해양 주권의 상실로 인해 피해를 감지하고 있었고, 볼리비아가 계속해서 고립된 채 있을 수 없음을 반복해서 인정해왔다. 끊임없이 합의나 선언 방식으로 칠레는 태평양에 대한 볼리비아의 주권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볼리비아는 국제법이 제공하는 국제적인 논쟁거리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메커니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감지하고 100여년 이상 끌어온 이 문제를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지하기로 결정했다.

볼리비아는 칠레와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가 되었음을 표현해 왔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남미의 통합 과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에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다비드 초께우안까 세스빠데스

볼리비아 외교부 장관

따우안띤수오 제국 훨씬 이전에, 안데스 산맥의 고대 도시였던 띠아우안나꾸는 해안 지역에 문명의 흔적을 남겼다. 후에 만코 까팍과 마마 오실로 왕조는 안데스 고원 지대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놀라운 문화를 전파했다. 리또랑을 시작으로 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잉카 문화에서 파생되었고, 잉카 문명이 존재했던 흔적들을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따까마라는 단어는 께추아(Quechua)에서 온 말로, 잉카 우뵤끼 통치 시대에 지금의 영토를 발견해서 이 땅을 제국의 땅으로 합병했다.

호세 에스꼬바리 꾸시간끼

1979년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볼리비아 외교사[2013. p77]

1.

볼리비아 해양 주권에 대한 역사적 해설 및 상실

안데스 지역과 아따까마(Atacama) 해안을 연결하는 유대관계는 이 지역의 땅과 바다가 연결되어 있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팽창의 시기에 티와나쿠(Tiwanaku) 문화는 아사빠 계곡에 최소 7개의 정착지를 건설했다. 점령지의 남서쪽에서는 잉카 제국이 아따까마 사막까지 진출했다. 아이마라(Aymara) 민족은 교류를 하면서, 안데스 고산지와 해안을 연결되는 지리적 공간에서 가축과 농업으로 생계로 꾸려나갔다. 식민지 통치자들도 이러한 유대 관계를 존중했는데, 이는 볼리비아가 아따까마 지역의 넓고 풍부한 해안 지역을 토대로 건설되었음을 설명한다. 볼리비아는 칠레의 침략으로 볼리비아 지리와 역사가 바뀐 1897년까지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했다.

페루 부왕령과 차르카스의 왕립심의원

스페인 정부는 아메리카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정치 행정 조직을 만들었는데, 부왕령과 식민지 총독부를 세웠다. 1542년 페루 부왕령을 설치하였다가, 1559년 법령을 통해 건설된 심의원으로 나뉘지는데, 그중 하나가 차르카스 심의원 (오늘날 볼리비아)으로, 법적으로 아따까마 지역과 그 해안 지역을 관할했다. 차르카스 심의원은 북쪽으로 로아강부터 남쪽으로 위도 25도인 살라도강에 이르는 영토를 통솔했다.

리오데라בל라따 부왕령 및 차르카스 왕립심의원

1776년 리오 데 블라따 부왕령을 세우면서, 아따까마 지역을 통솔하던 차르카스 심의원도 신설된 독립체의 관할 구역으로 변화했다. 당시 이 지역은 '알토 페루 [고지대 페루]로 불렸다. 1782년 새로운 부왕령은 뽀토시 행정주를 비롯하여 8개의 행정주로 나뉘졌다가, 각 행정주가 다시 6개의 소지역으로 세분화 되었는데, 아따까마 해안 지역이 그 중 하나였다.

볼리비아 독립(1825)

1825년 독립을 쟁취한 볼리비아는 1810년 신생 독립한 히스패닉 아메리카 공화국들이 당시 자신들이 소유한 식민지 국경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우띠 포시데띠스 우리스' 원칙에 따라 전 차르카스 심의원의 관할 경계를 기준으로 국경을 결정했다. 1826년 볼리비아의 정치적 분열로 전 식민지 행정주가 지역으로 나뉘지고, 이 지역이 다시 도로 나뉘졌는데, 그 중 구아노와 초석, 봉사, 구리, 은이 풍부한 아따까마 도는 뽀토시 지역에 속했다. [사진1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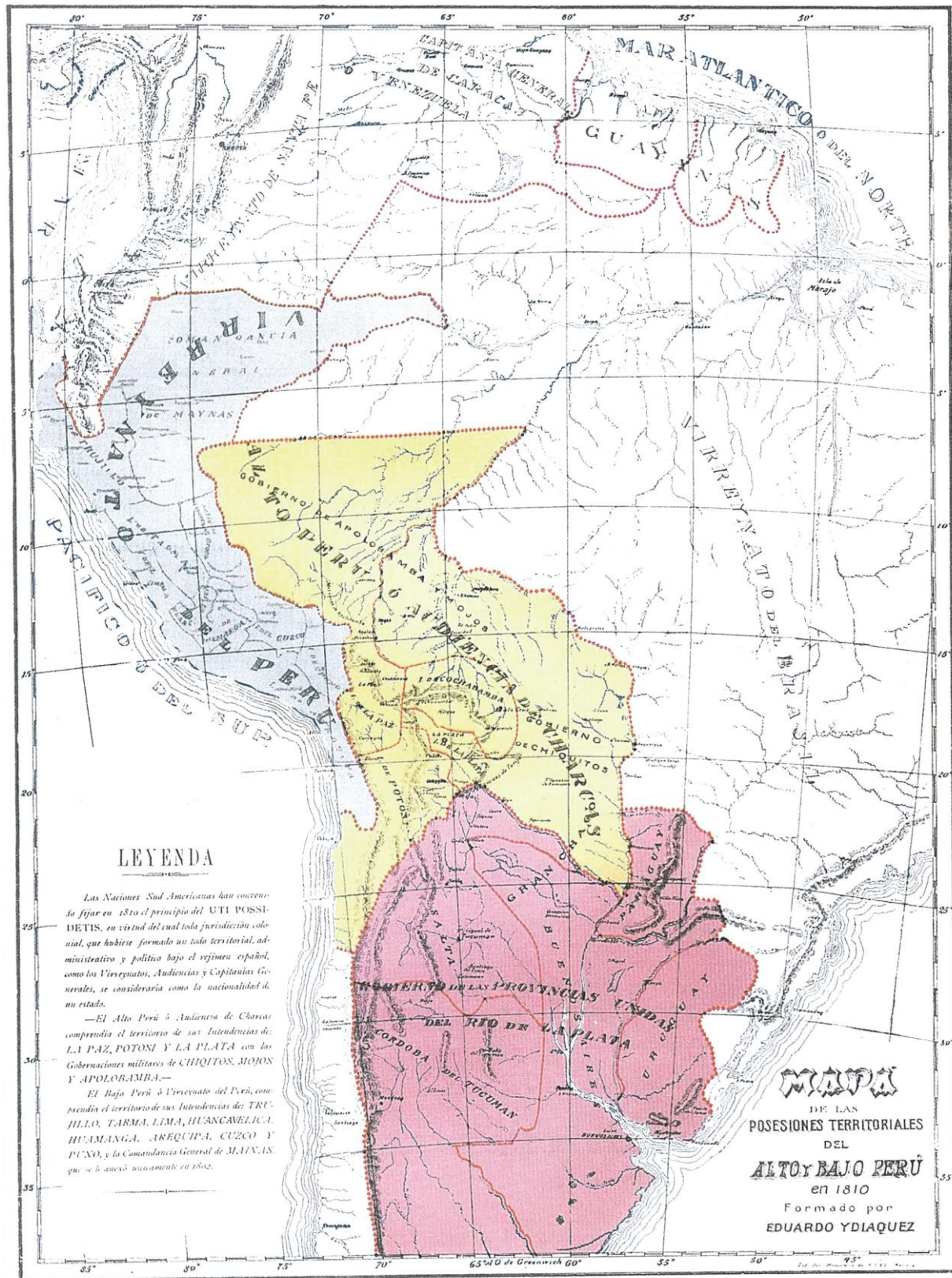


사진 1. 1810년 페루 부왕령, 고지대 페루, 차르카스 왕립심의원, 이로데플라타 부왕령, 에두아르도 이디아게스. 당시 '우띠 뽀시떼띠스 우리스'에 따라 차르카스 심의원이나 고지대 페루가 태평양 해안과 아따까마 사막을 관할했다.



사진 2. 볼리비아 공화국이 건국될 때의 칠레와 라플라타와 볼리비아나 고지대 페루. 저자:홀 S.(시드니), 1829. 독립을 쟁취한 후 볼리비아는 이전 차라가스 심의원의 관할했던 지역을 기준으로 태평양 연안과 아따까마 사막으로 주권을 확장해 나갔다.

리또랄 지역의 탄생(1829)

리또랄 도(道)는 1829년에 탄생하여 1867년까지 북으로 리오 강, 남으로 위도 25° 위에 있는 살라도 강과 경계를 두고 약 12만 평방미터의 지역으로 확장했다. 깔라마와 산 빠드로 데 아따까마의 섬 도시들은 물론이고 안또빠가스따, 꼬비아, 메일로네스 항구들이 이 볼리비아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진3 참조]

볼리비아 해안 지위에 대한 인정

칠레는 연안 국가로서 볼리비아의 지위나 볼리비아 해양 주권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1822년과 1823년, 1828년, 1833년까지 칠레 헌법은 아따까마 사막을 칠레의 북쪽 국경으로 인정했다.

더구나 1833년 <칠레와 볼리비아의 우호와 통상, 항해에 관한 협정>과 같은 국제 협정도 볼리비아의 해양주권을 인정했다.

페루의 볼리비아 해양 영토 침략

1840년대 초 칠레인들은 이미 볼리비아의 해안 지역을 점령하여,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볼리비아 당국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지역의 풍부한 구아노 매장층을 수탈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칠레는 볼리비아의 영토에 속하는 위도 23°까지 권한을 확장하려 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 방법을 모색했다.

볼리비아와 칠레의 국경 조약(1866년과 1874년)

칠레와의 영토 분쟁이 발생하자 두 정부는 두 가지 국경 협정을 체결했다. 첫 번째 협정은 1866년 8월 10일에 체결한 것으로, 위도 24°에 국경을 정하되, 위도 23°와 25° 사이의 구아노와 금속, 광물에 대한 공동 채굴에 합의했다. [사진 4 참조]

두 번째 칠레-볼리비아 국경 협정은 1874년 8월 6일에 체결하였는데, 위도 24도 경계를 확인하고 위도 23도까지 칠레의 구아노 채굴권을 인정했다. 또한 칠레 시민이나 산업, 자본에게 25년 동안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1874년 협정의 추가의정서가 일 년 후에 체결되었는데, 협정으로부터 발생한 어떤 분쟁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진 5와 6 참조]



사진 4. 1866년 협상했던 아니세토 베르가라 알바노. 주 라파스 칠레 전권대사와 마리아노 도나토 무노스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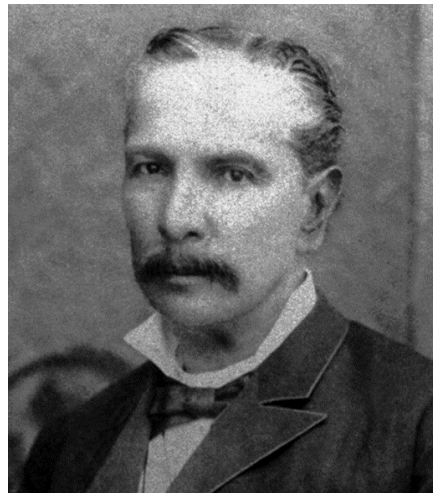


사진 5. 카를로스 워커 마르티네스. 1874 협약에 서명한 주 볼리비아 칠레 전권대사



사진 6. 마리아노 빠쁘띠스따. 1874년 협약에 서명한 볼리비아 외무부장관

1877년 쓰나미로 인한 10% 세금 부과

1877년에 쓰나미에 이은 (이후 측정에서 리히터 척도로 8.8로 추정되는) 지진으로 볼리비아 해안선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지역의 피해가 엄청났다. [사진7 참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지 1878년 끔찍한 가뭄은 볼리비아 전국토의 중요한 지역들을 더욱 망가뜨렸다. 자연재해로 인해 볼리비아 정부는 안토빠가스따 지역의 앵글로-칠레 질산염 철도 회사에 수출되는 초석100 킬로그램 당 10 센트의 세금을 부과하여 자연재해를 입은 그 지역의 복구할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사진8 참조] 이러한 볼리비아 정부의 요구에 칠레 정부는 불만을 터뜨렸고, 그 후 앵글로-칠레 질산염 철도 회사는 볼리비아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1875년 추가의정서를 적용하여 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칠레의 볼리비아 침략과 태평양 전쟁

앞서 합의한 중재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칠레는 선전포고도 없이 1879년 2월 14일 안토빠가스따 항구를 침략하였다. 볼리비아는 원치 않는 대참화 속으로 끌려들어갔고, 1873년 페루와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권을 지켜야 했다. 상호방위조약은 페루와 공동으로 볼리비아의 리토랄 전역과 페루의 따라빠까, 따끄나, 아리까, 나아가 페루의 수도 리마로 칠레 군대가 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 [사진9 참조]



사진 7. 1877년 쓰나미로 인해 파괴된 볼리비아 해안지역



사진 8. 1879년 안토빠가스따의 질산염철로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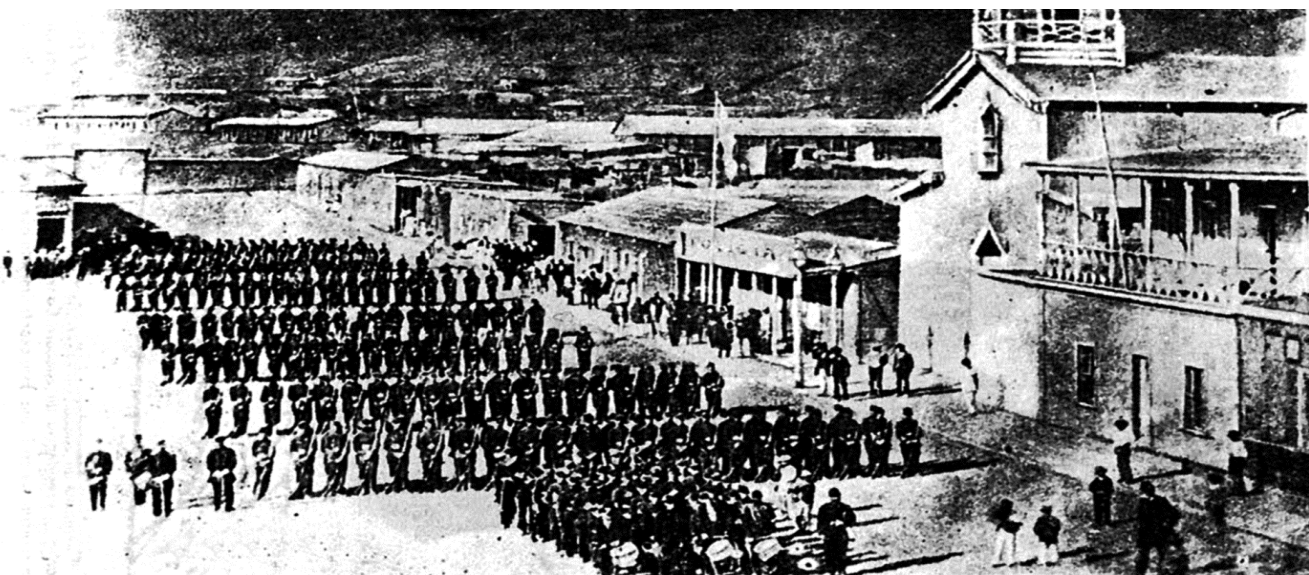


사진 9. 칠레 군이 안토빠가스따를 침략한 후 끌론 광장에서 행진하고 있는 칠레 제3대대



사진 10. 또빠떼르를 방어하기 위해 에두아르도 아바로아를 따르는 병사들

1879년 3월 23일 라디스라오 까브레라와 에두아르도 아바로아의 지휘 하에 볼리비아 까라마 시를 영웅적으로 방어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10, 11,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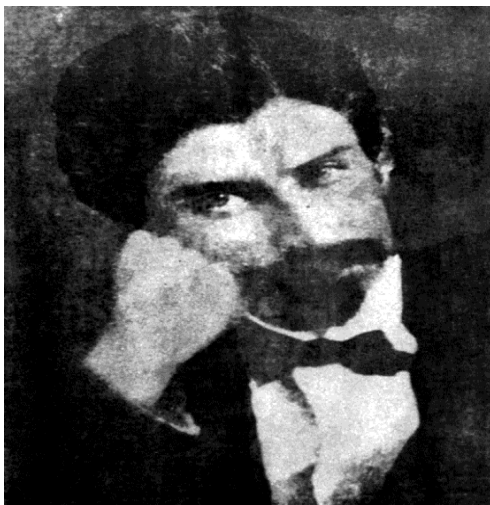


사진 11. 1879년 3월 23일 에두아르도 아바로아는 또빠떼르 다리에서 항복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했다. 볼리비아의 가장 중요한 시민 영웅이다.



사진 12. 라디스라오 까브레라. 깔라마의 뛰어난 시민. 그는 깔라마 도시 방어군을 조직하여 1879년 3월 23일에 에두아르도 아바로아와 함께 싸웠다.

1884년 정전협정

1883년 페루가 체결한 안콘 협정을 체결한 칠레는 국민투표로 그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 10년 동안 자신의 행정 관할 하에 있던 따그나와 아리카와 함께 따라빠까 지역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칠레는 볼리비아에 영토 침범을 확대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위협하여 강제로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강압적인 협정 체결에도 볼리비아를 대표한 벨리사리오 살리나스와 벨리사리오 보에또는 볼리비아는 바다로 나가는 출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공공연하게 표명했다. [사진13과 14 참조]

따라서 양국은 최초의 평화협정이 아닌 1884년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정전협정은 따그나와 아리카의 상황이 정리되어, 칠레의 영토로 병합된 그 지역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칠레가 볼리비아에 해양 접근권을 제공한다는 논리로 볼리비아 해안지대에 대한 칠레의 지배권을 유지했다.

아브라함 꼬니그의 문서

20세기 초 칠레는 1900년 8월 13일 문서에 남아있는 이전의 약속들을 부인하려고 했다.

“전쟁 후 승전국은 자신의 조건을 부과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볼리비아는 패배하였으나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토타 지역을 양도한다. [...] 볼리비아가 해안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의 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언론과 거리에서 날마다 반복해서 퍼지고 있는 오해이다. 그 같은 일은 없다. 칠레가 볼리비아의 해안을 점령했고 독일이 알사체와 로라이네를 제국에 병합시키고, 북아메리카의 미국이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한 것과 같은 권리를 가졌다. 우리의 권리는 승리에 뿌리는 두고 있으며 이는 국가들의 최고의 법이다. 볼리비아 해안 지역의 자원이 풍부하여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이곳을 우리는 지켜야 하며, 가치가 없다면 이곳을 지킬 이유가 없다.” [사진15 참조]

1904년 협약

아직 칠레군이 볼리비아의 해안지역을 점령하고 있어 항구에 접근할 수 없고 통행이나 칠레의 세관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면서 볼리비아는 1904년 10월 20일 평화와 친선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침략 이후 줄곧 칠레가 점령했던 해안 지역에 대한 칠레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볼리비아는 칠레 영토를 통과하여 태평양 항구에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었다. 조약은 또한 일정 정도의 재정적 보상과 아리카와 라빠스를 잇는 철도 건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이행되고 있는 이 협정은 볼리비아의 고립으로 인한 결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 접근권에 대해 볼리비아와 칠레 간의 협상에 중지부를 찍지도 못하고 있다.



사진 13. 벨리사리오 살리나스. 1884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볼리비아 대표



사진 14. 벨리사리오 보에또. 1884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볼리비아 대표



사진 15. 아브라함 꼬니그. 1900년 주 라빠스 칠레 전권대사

2.

볼리비아와 해양주권 협상 중 다짐한 칠레의 약속

1904년 협약 체결을 전후로 칠레는 단독으로 또는 두 나라 간 동의를 통해서 볼리비아가 태평양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895년 협약

볼리비아와 칠레는 1895년 5월 18일 평화와 친선 협약과 영토 이전에 관한 협약, 통상 협약, 세 협약을 체결했다. 세 협약은 양국의 의회에서 비준을 받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비준을 상호 교환했다.

첫 번째 협약에 따라 칠레는 1884년 정전협정 하에서 해안지역에 대한 완벽하고 지속적인 지배를 계속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협약을 통해서 칠레는 두 지역을 점령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따끄나와 아리카를 볼리비아에 반환할 것을 약속했다. 칠레가 그 지역들을 차지할 수 없었으면, 비토르 인레트에서 까마로네스 라비네까지 양도해야 했다. 칠레는 어떤 반환도 하지 않았다.

파리 회의 및 국제연맹(1919-1922)

볼리비아는 1919년 파리 회의를 앞두고 다자간 포럼의 체계 내에서 처음으로, 1920년과 1922년 국제연맹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21년 9월 28일 총회에서 칠레 대표인 아구스틴 에드워드는 볼리비아의 해양 봉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볼리비아와 직접 협상에 들어갈 것을 진지하게 제안했다. 일 년 후 칠레 대표단인 마누엘 리바스 비구나는 국제연맹에 제출한 1922년 9월 19일 문서를 통해서 볼리비아와 직접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칠레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었다. [사진16, 17, 18 참조]

1920년 1월 10일 법령

1920년에 주 라빠스 칠레 전권대사인 에밀리오 벨로 꼬데시도는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까를로스 구띠에레스와 법령에 사인을 하고, 1904년 협약과 별개로, 볼리비아의 독립적인 태평양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볼리비아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칠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

칠레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벨로 꼬데시도는 볼리비아가 해양 접근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칠레는 아리카 북부의 상당 지역과 안콘 협약에 따라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철로를 양도한다'이다.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팔마 대통령의 성명서(1922)

칠레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대통령은 양자간 직접 협상으로 볼리비아와의 해결책을 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1922년 칠레 의회에서 해양 봉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어 하는 볼리비아의 희망을 칠레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하는 연설로 이를 입증해 보였다.

루이스 이스끼에르도 외무부 장관의 기록(1923)

주 산티아고 볼리비아 전권 대사인 리카르도 아이메스 브레이레의 제안에 대해 칠레 외무부 장관인 루이스 이스끼에르도는 1923년 2월 6일과 22일 기록에서 칠레는 1904년 평화협정을 수정하지 않고 칠레의 영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볼리비아의 상황에 대해 새로운 대책들을 준비해나갈 것임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칠레 대통령과 칠레 대표단이 국제동맹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과 일치했다. [사진19 참조]

미구엘 그루차가 대사의 제안(1926)

1926년 6월 10일 미구엘 그루차가 주 워싱턴 칠레 대사는 프랭크 켈로그 미국무부 장관에게 따끄나와 아리카 지역을 나누는 것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따끄나는 페루에, 아리카는 칠레의 영토로 하고, 볼리비아는 볼리비아 국경에서 빨로스 시와 만까지 뻗어있는 4 킬로미터의 협곡 지역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자주적으로 태평양에 접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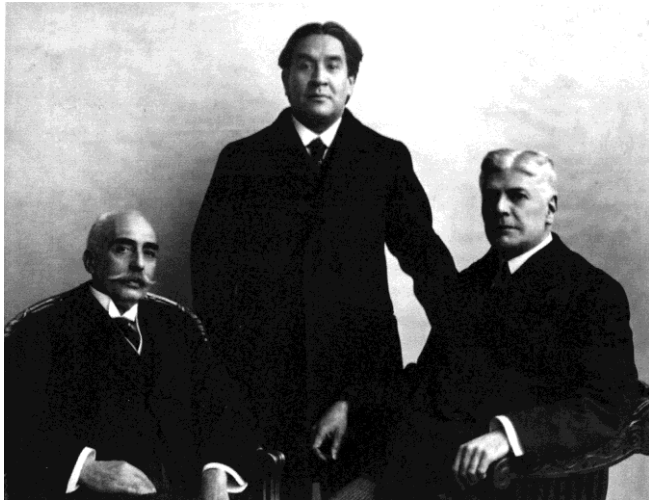


사진 16. 국제동맹의 볼리비아 대표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펠리스 아벨리노, 뽀라스 따마요, 뽀로리안 삼브라나



사진 17. 아구스틴 에드워드. 국제동맹 칠레 대표단 단장



사진 18. 나누엘 리바스 비구나. 국제동맹 칠레 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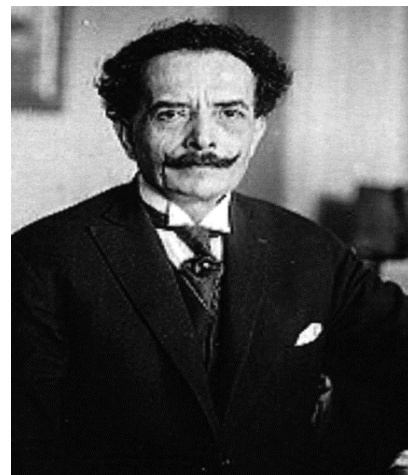


사진 19. 리카르도 헤이메스 프레이레. 주 산티아고 볼리비아 전권대사

벨뜨란 마띠에우 외무부 장관의 제안서(1926)

1926년 6월 23일 벨뜨란 마띠에우 칠레 외무부 장관은 칠레-페루 분쟁의 중재자인 미국의 제안으로 칠레가 아리카 지역 일부를 볼리비아에 양도할 것이라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사진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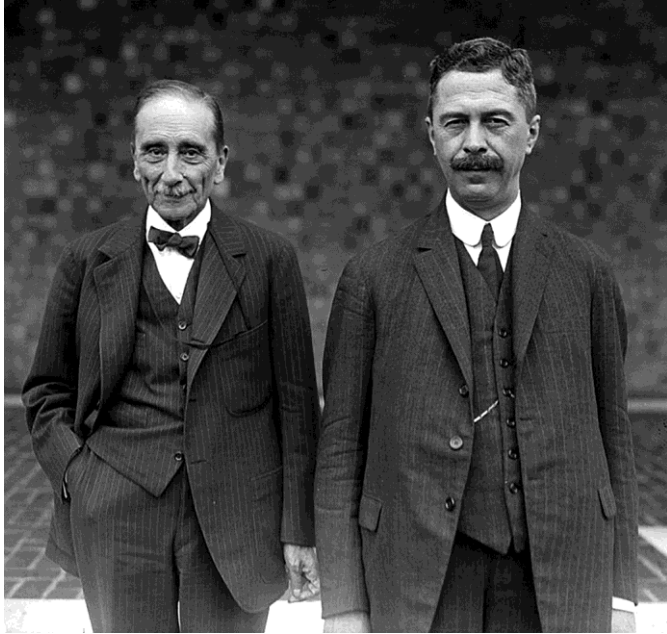


사진 20. 1926년 벨뜨란 마띠에우 칠레 외무부 장관과 미구엘 고루차가 주미 칠레대사

켈로그 미 국무부 장관의 제안에 대한 호르헤 마떼 외무부 장관의 답변(1926)

1926년 11월 30일 미 정부는 따끄라와 아리카와 관련한 페루-칠레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프랭크 켈로그 국무부 장관을 통해서 칠레 정부와 페루 정부에게 “따끄라와 아리카 지역의 모든 권리와 지위, 이해관계를 영구히 볼리비아에 양도할 것”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진21 참조]

칠레는 원칙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하고 같은 해 12월 4일 호르헤 마떼 외무부 장관은 켈로그 장관에게 칠레 정부는 따끄라와 아리카의 분명한 소유권이 정돈되면 볼리비아에 땅과 항구를 이양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호르헤 마떼 장관은 칠레 정부는 이전의 선언들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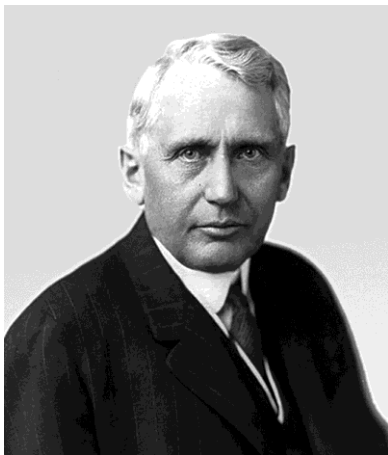


사진 21. 프랭크 B. 켈로그. 미국무장관

볼리비아를 타겟으로 한 1929 리마 협정과 부속서의정서

1929년 6월 3일 체결된 리마 협정을 통해서 칠레는 아리까를 획득했고 페루는 따끄라를 반환 받았다. 게다가 두 나라는 (처음에는 비밀로) 어느 나라도 이 지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세력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부속서의정서에 합의했다.

국을 직접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이 부속서의정서에 대해 볼리비아 정부는 리마 협정이 볼리비아에 해양주권을 보장하겠다는 칠레의 이전의 약속들을 파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1950년 합의

1950년 6월 합의는 1946년 볼리비아가 개시한 외교 협상의 결과물로, 1946년은 칠레의 가브리엘 곤잘레스 비데라 신임대통령이 그의 취임식에서 아니세토 솔라레스 외무부 장관과 알레르도 오스뜨리아 구띠에레스 대사에게 볼리비아에 해양주권을 제공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 때였다.

이후 몇 년간 오스뜨리아 대사는 곤잘레스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들과 몇 차례의 회의를 가지면서 볼리비아 대사와 오라시오 워커 라라인 칠레 외무부 장관이 상호 서명한 1950년 6월 1일과 20일 외교문서에 대한 확약을 이끌어내었다.

이 문서는 "볼리비아는 독자적인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칠레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비영토적 성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공식적으로 직접 협상을 개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더구나 언급된 문서에서 칠레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볼리비아와 직접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이전 약속의 의지를 재확인해 주었다. [사진22 참조]



사진 22. 볼리비아 대사 알베르토 오스뜨리아 구띠에레스

"...칠레 외무부의 일관된 전통과 뿌리 깊은 아메리카 정신에 비추어 나는 볼리비아의 항구에 대한 열망에 대하여 토론을 거부할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여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이를 표명한 바에서도 드러난다. 1946년 그 역할을 맡았을 때, 볼리비아의 헤르초그 대통령이 나에게 칠레의 약속을 떠올리게 했고, 칠레 외무부가 준수하는 규칙에 따라, 나는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 1950년 7월 19일, 베아(Vea) 잡지에 실린 칠레 대통령의 선언

사진 23. 딘 아체슨 미국무장관과 오라시오 워커 라라인 칠레 외무부 장관과 에드워드 밀러 외무부 차관이 배석하여 볼리비아 협곡에 대한 협상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해리 투르만 대통령과 가브리엘 곤살레스 비델라 대통령(자리에 앉아 있음)



이후 이어진 많은 공식 선언에서도 칠레 당국은 이 합의에 대한 동의를 표명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곤잘레스 대통령은 해리 투르만 북미 대통령에게 볼리비아에게 독자적인 태평양 주권을 주는 대가로 칠레는 띠띠까까 호수의 저수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에 대해 알렸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르만 대통령은 칠레 정부의 제안과 관련하여 볼리비아와 칠레 간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공식적으로 칠레에 호수 이용 권한을 주는데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상 내용의 진실과 관련한 볼리비아의 성명서가 있었지만, 언론에서는 볼리비아와 칠레 양국 정치권의 목적에만 주목하면서, 진전 없이 존재하던 1950년 합의를 바탕으로 한 협상 개시를 방해했다. [사진23 참조]

마누엘 드루고 대사의 제안서(1961)

주 라파스 대사인 마누엘 드루고를 통해서 1961년 7월 10일에 칠레는 1950년 6월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볼리비아의 독립적인 태평양 접근권을 협상할 의무를 재확인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1962년 4월 칠레는 단독으로 라우카 강의 수로를 변경하여 볼리비아와 분쟁을 촉발시키고 양국 간 외교 관계를 파탄 나게 했다. 이로 인해 해양 문제를 둘러싼 지속적 협상은 중단되었다.

차라냐 협상에 따른 약속(1975-1978)

칠레와 볼리비아 협상의 새로운 라운드가 1970년 중반 개시되었다. 이번에는 1975년 2월 8일 볼리비아 국경도시인 차라냐에서 볼리비아 우고 바세르 대통령과 칠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대통령의 공동선언 서명으로 시작되었다. 이 합의문에서 양국은 "볼리비아와 칠레 국민들의 열망과 상호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볼리비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륙 상황과 같은 결정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은 외교 관계 회복에 합의했다. [사진25 참조]

그에 따라 1975년 12월 19일 칠레는 협곡으로 볼리비아 영토에 연결된 리네아 데 라 곤고르디아까지 아리가 북부 지역에서 위치한 해양주권을 볼리비아에 양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전의 약속과 달리 칠레는 영토 교환을 비롯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사진25 참조]

더구나 칠레는 1929년 리마 협정 부속서의정서를 들먹이며 앞서 언급한 영토와 해양주권을 볼리비아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페루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1976년 11월 19일, 페루는 바다와 연결된 지역은 3국이 권리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아리가 북부 지역의 협곡 지역에 대한 권리를 볼리비아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했다. [사진26 참조]



사진 24. 1975년 차라냐 회담(또한 “차라냐의 포옹”으로도 알려짐)에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과 우고 반세르 장군.



사진 25. 1975년 칠레가 볼리비아에게 제안한 협곡의 위치를 표시한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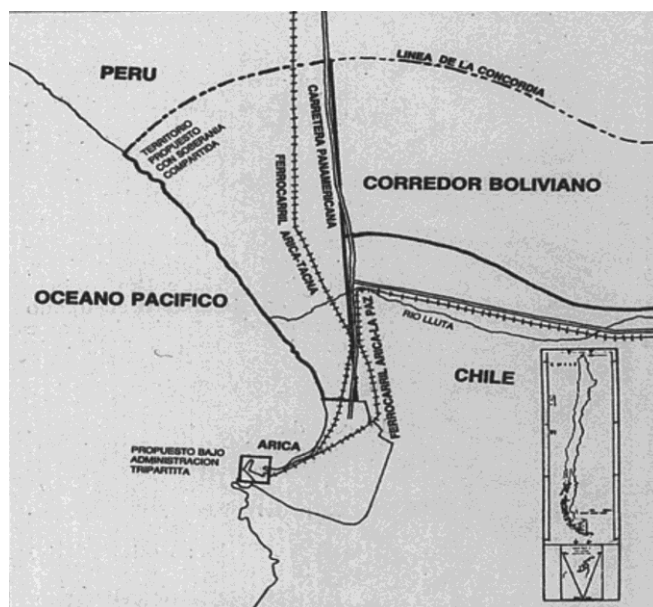


사진 26. 1976년 페루가 제안한 3국이 주권을 공유하는 지역과 볼리비아의 종주 지역

차라냐 협상이 진행되던 1975년 8월 6일, 미주기구 상임위원회는 볼리비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립 상황은 남미 전 대륙의 문제로 볼리비아가 이 상황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하는 결의 157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칠레는 페루의 제안을 거부하고 볼리비아와 칠레 간 협의에서 페루의 제안을 협상하는데 반대했다. 이러한 칠레의 입장과 영토 교환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페루와 칠레 두 나라를 설득하기 위해 볼리비아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협상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78년 3월 볼리비아는 칠레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미주기구에서 칠레의 약속(1979-1983)

1979년 미주기구 9차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426호는 볼리비아 해양주권 문제는 지속적인 대륙적 이해관계의 문제임을 명시하고, 당사국들에게 “볼리비아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태평양 연결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열린 협상을 개시하되, 이 협상은 관련 양국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어떤 영토 보상도 포함할 수 없다는 볼리비아의 제안과 더불어 통합적인 다자간 발전을 위한 항구 지역을 포함하도록” 촉구했다. 9차 총회에서 칠레 대표 빼드로 다사는 칠레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태평양 접근권에 대하여 볼리비아와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림27 참조]

칠레가 찬성표를 던진 1980년과 1981년에 채택된 후속 결의안은 426호 결의안 내용에서 더 나아가 볼리비아에 독립적인 태평양 접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결의안의 꾸준한 흐름에 이어 1983년 13차 회기에서는 칠레의 찬성과 합의로 결의 686호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의안은 볼리비아와 칠레에 “관련 당사국의 상호 편의, 권리,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특히 볼리비아에 독립적인 태평양 출구를 확보할 방법을 비롯하여 양국 국민들을 분열시킨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양국 국민들의 우호 강화와 관계회복을 위한 과정을 시작”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1983년 결의안은 채택에 앞서 볼리비아와 칠레 정부의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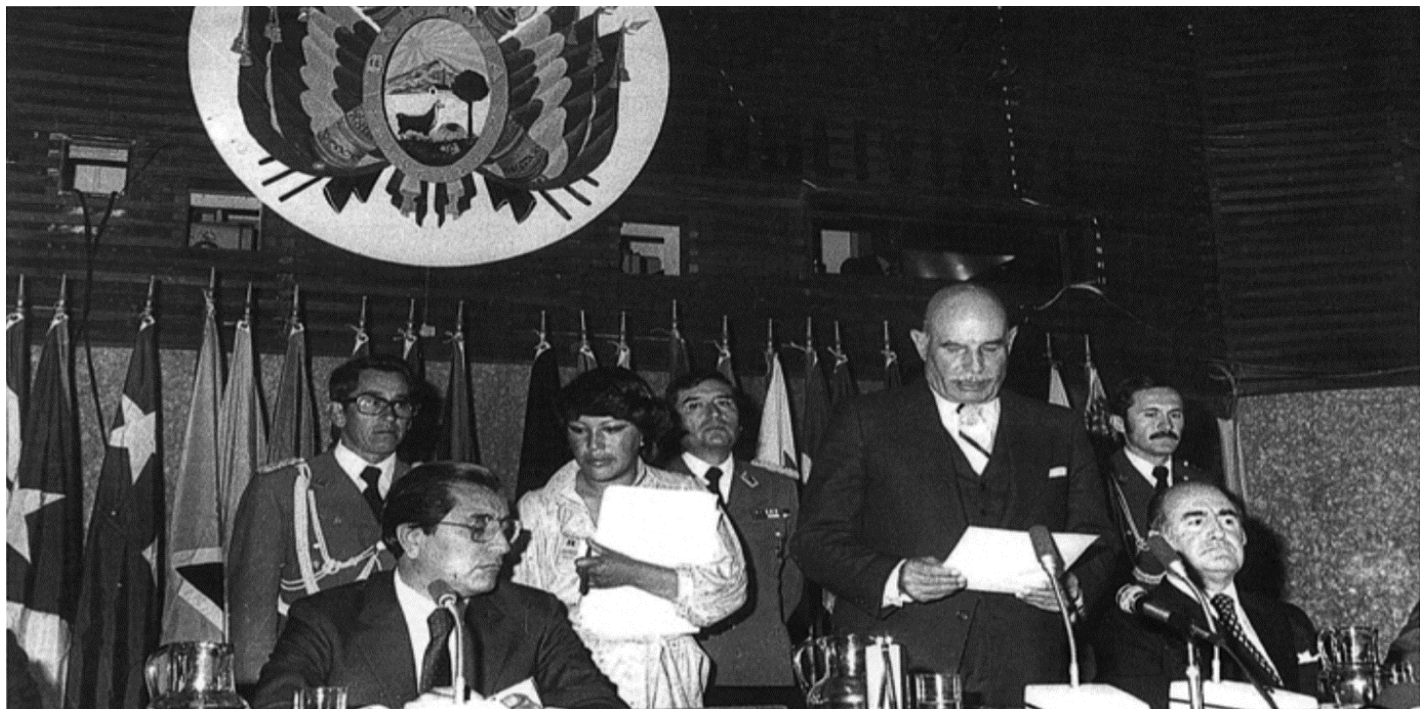


사진 27. 1979년 라파스에서 개최된 미주기구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월터 구에바라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서 있음). 그 옆 무대에는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구스타보 베르난데스(좌)와 알레한드로 아르필라 미주기구 사무총장(우)

“신선한 접근” 협상(1986-1987)

1986년 볼리비아 귀에르모 베드레갈 외무부 장관과 칠레 제이미 델 발레 외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회담을 열어 “신선한 접근”으로 알려진 새로운 협상 과정을 도출해 내었다.

이 협상은 1987년 4월 21일~2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은 칠레 외무부 장관에게 두 가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첫 번째는 아리가 북부 지역의 볼리비아 영토와 연결된 협곡 지역을 볼리비아에게 양도할 것을 제안했고, 두 번째는 칠레의 영토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수민족 거주지를 양도할 것을 제안했다. 몬테비데오 회의 후 나온 공동 보도 자료는 볼리비아의 제안에 대해 칠레 정부가 고려할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칠레 정부는 1987년 6월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볼리비아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한 협상 과정을 갑자기 중단해 버렸다. [그림28 참조]

본 대사관은 볼리비아 제안서의 핵심, 즉 아리가 북부 지역의 협곡 지역이든, 해안지역에 위치한 소수민족거주지이든, 칠레 영토의 양도를 언급한 두 가지 대안을 칠레로선 받아들 수 없음을 표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987년 6월 9일 칠레 외무부의 보도자료



사진 28. ‘신선한 접근’으로 알려진 협상 중 우루과이 외무부 장관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중앙)과 함께 있는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구에르모 베드레갈(좌)과 칠레 외무부 장관 헤이메 델 발레(우).

예외 없는 의제(2000)

2000년 2월 볼리비아 하비에르 무리요 로차 외무부 장관과 칠레 우안 가브리엘 발데스 외무부 장관은 [포르투갈] 알가르베에서 만나 “어떤 예외도 없이” 양국 관계에 모든 핵심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작업 의제를 준비하는데 동의했다. 장관급 회의에 이어 칠레와 볼리비아 양국 대통령은 2000년 9월에 브라질리아, 11월 파나마, 2001년 4월 퀘벡에서 만나 알가르베 합의의 내용을 확인했다.

메사 대통령과 라고스 대통령간의 논의(2003-2004)

볼리비아 카를로스 메사 대통령과 칠레의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이 2003년 11월 14일 볼리비아 산타 고루스에서 13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에서 만났을 때, 볼리비아 대통령은 그때가 볼리비아의 태평양 접근권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은 통치권이 “문제”였으며, 이 문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다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심지어 그는 볼리비아가 이전 페루의 영토로 페루의 통치권이 미치는 협곡 지역의 양도에 대해 페루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주권 문제를 토론할 의지가 있다고 표명했다.

아메리카 몬트레이 정상회의(2004)

2004년 1월 13일 몬트레이에서 개최된 아메리카특별정상회의에서

메사 대통령은 최고위급 다자간 포럼에서 볼리비아의 불공평한 내륙 상황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 라고스 대통령과 칠레 정부에 볼리비아의 해양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관계를 회복하자 라고스 대통령의 회신에 메사 대통령은 일단 볼리비아의 해양 봉쇄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방안이 도출되면 양국 관계는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실제 칠레와 볼리비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로 양국 간에 외교 관계의 부재로 증명되고 있다.

로드리게스 벨트세 대통령과 라고스 대통령 회담(2005)

볼리비아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벨트세 대통령은 칠레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을 2005년도만 뉴욕, 살라만카, 마르 델 뿔라또, 몬테비데오에서 4차례 걸쳐 만남을 가졌다. 만날 때마다 어떤 주제도 예외 없이, 예를 들면 볼리비아의 고립 상황과 같은 가장 민감한 주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고 압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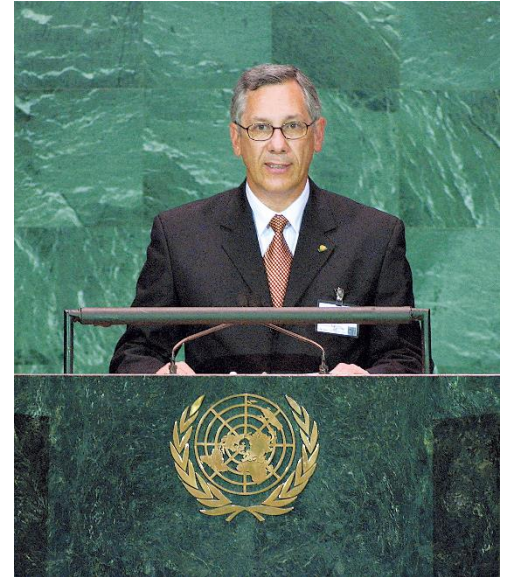
최고 국가수반들의 이러한 회의들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긍정적 대화를 진행해나가는 토대가 되었다. [사진29 참조]

13개 중점 의제(2006)

2006년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칠레 미첼 바첼레르 대통령은 해양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13개 중점 의제를 발표했다.

이 기간 칠레 당국은 볼리비아에 통치권 이양 문제를 비롯해서 이후 시작할 대화 주제와 관련 어떤 고민들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림30 참조]

사진 29.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벨트세. 볼리비아 대통령(2005-2006)



가장 최근의 대화 시도(2010-2011)

이러한 배경과 상호 고위급의 신뢰를 확보한 상황에서 2010년 7월에 열린 볼리비아-칠레 정치 협의 메커니즘 22차 회의에서 양국의 대표단은 “다음 23차 회의에서 양국의 이해와 조화를 이뤄 나가는데 유용하고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제안하자”는데 합의했다. [사진31 참조]

다음 회의는 2010년 11월 아리까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칠레 정부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고, 회의를 재개하자는 볼리비아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날짜가 되어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2011년과 2012년 전반에 걸쳐 상황이 반복되는 속에서 칠레 고위 당국이 양국 간 미해결 문제는 없으며, 볼리비아는 칠레 영토를 거쳐서 독자적인 태평양 접근권을 주장할 어떤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주장은 칠레 정부가 볼리비아의 해양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하거나 협상의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볼리비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평화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 30.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칠레 공화국 대통령



사진 31. 칠레 알프레도 모레노 외무부 장관과 회담 중인 볼리비아 다비드 초께우안까 외무부 장관

양자간 대화가 볼리비아에 통치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포함하는지를 물었을 때 칠레 알레한드로 빠스리 외무부 장관은 “가능한 그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 2006년 4월 16일, 칠레 알레한드로 빠스리 외무부 장관의 연설문에서

3.

볼리비아와 해양주권 협상을 진행한 칠레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 및 대사들

태평양 전쟁의 한복판에서 칠레의 여러 당국자들은 명백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볼리비아에 가할 수 있는 압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볼리비아를 막다른 골목에 내버려둘 수 없었다. 볼리비아를 무한정 고립 상태로 두는 것은 양국의 발전에 말도 안 되는 영구적 문제를 계속해서 대면해 가야 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칠레의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은 볼리비아의 해양주권을 보장하여 양국 관계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태평양 전쟁 당시 아니발 뻬토 정부의 외무부 장관이자 후에 칠레 대통령이 된 도밍고 산타 마리아를 시작으로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진행되었다. 그의 의견은 칠레의 여러 국가수반들과 당국의 지지와 환영을 받아서 이후 계속해서 행동 방침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이 되었다.

칠레 정부의 여러 많은 행위들과 정권을 잡았던 많은 고위 당국(대통령, 외무부 장관, 대사)의 선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특히 이러한 선언은 칠레 단독으로 또는 양자 합의를 통해서 발표되었다.

19세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칠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칠레 정부의 신뢰를 약속하면서 100여 년 전 기틀을 마련해 놓은 경로를 따랐다.

독립적인 해양 출로를 가지고 독립한 나라가 팽창 전쟁으로 인해 그 출로를 잃은 나라는 현재 볼리비아가 유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미묘한 상황이 함의하는 바를 인식한 칠레는 평화협정 체결 후에 지체되고 있는 문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볼리비아의 해양주권 회복 문제를 볼리비아와 공동으로 이해해 나가겠다는 제안과 약속을 공식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했다.

칠레 고위 관리와 당국은 지역 통합의 과정이나 칠레나 볼리비아 양국에게도 양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만족스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한정 미뤄두는 건 불가능하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칠레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물려받은 도밍고 산타 마리아의 유산은 완벽할 정도로 분명하다. 그것은 해양에서 고립된 채 볼리비아를 무한정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32 아니발 뻬토 |
칠레 대통령
(1876 - 1881)

칠레 대통령으로서 뻬토 대통령은 볼리비아 안토빠가스따 항구 침략 명령을 내려 이른바 태평양 전쟁을 촉발시켰다. 그의 목적은 볼리비아 리토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었으나 볼리비아가 영구적으로 해양 봉쇄 상황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880년 7월 2일 에우세비오 리요에게 보낸 편지에서 “평화의 근간은 볼리비아의 입장을 따를 때 이루어진다. 볼리비아는 안토빠가스따와 로아강까지 리토타 지역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따끄나와 모께구아 지역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려고 한다.”



사진 33
도밍고 산따 마리아
뻬토 정부의 외무부 장관(1879 - 1880)
이후 대통령(1881 - 1886)

도밍고 마리아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내륙국으로 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였는데, 그의 집권 후 많은 칠레 국가수반들이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여 수용했다.

1878년 11월 26일 라빠엘 소또마이오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리아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질식시킬 수 없음을 한 순간도 잊지 말자. 그들의 땅이었던 안토빠가스따와 해안 지역을 빼앗긴 볼리비아에게 우리는 어떤 허가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으로서 그들만의 항구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볼리비아는 질식사시킬 수도, 질식사하게 해서도 안 된다...”



사진 34
호세 몬뜨
칠레 대통령
(1891 - 1896)

재임시절 칠레는 해양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볼리비아의 시급한 요구를 인정했다. 그래서 1895년 5월 18일 영토양도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조약에서 칠레는 볼리비아가 따끄라와 아리가 또는 비포르만부터 까마로네스 협곡까지의 지역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지역의 취득 여부에 따라 볼리비아에 따끄라와 아리가를 양도할 것을 진지하게 약속했다. 후에 양국은 협정에 대한 일련의 해설 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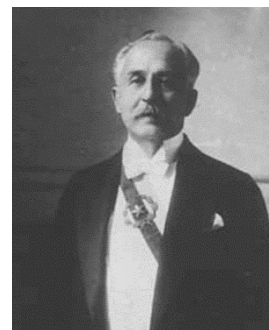


사진 35
루이스 바로스 보르고뇨
외무부 장관
(1894 - 1895)

1895년 5월 18일 영토양도조약에 서명했는데, 그 전문에는 “교역을 번성 시키고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은 높은 요구를 가진 볼리비아에게는 당연히 자유로운 해양 주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토 양도에 관한 특별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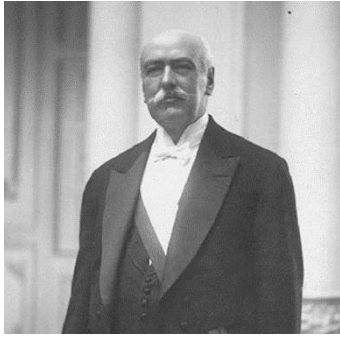


사진 36
우안 루이스 산우엔떼스
칠레 대통령
(1915 - 1920)

재임 시기, 칠레는 볼리비아의 봉쇄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산우엔떼스 정부는 볼리비아에 해양 주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협상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볼리비아와 칠레의 대표자들이 서명한 1920 행동 규칙에 포함되었다.



사진 37
에밀리오 벨로 꼬데시도
라빠스 칠레 전권 장관
(1920)

칠레 정부를 대표하여 에밀리오 장관은 1920 행동 규칙에 서명했는데, 행동규칙에서 "9항....칠레는 안콘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투표에 포함된 지역 안에 위치한 철로를 비롯하여 아리카 북부의 주요 지역을 양도함으로써 볼리비아가 자국의 해양 접근권을 획득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에 이어서 칠레는 볼리비아에 해양주권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1920년 1월 10일 행동 규칙]



사진 38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팔마
칠레 대통령
(1920)

여러 차례에 걸쳐 팔마 대통령은 직접 협상을 통해 볼리비아의 내륙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의지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922년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팔마 대통령은 볼리비아가 칠레 내에 그들과 같은 우호적 열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인터뷰에서 팔마 대통령은 "맞다. 법과 정의를 따르도록 되어있는 중재판정이 허락한다면, 나는 분명하고 빈번하게 제기되는 볼리비아의 열망을 형식과 내용에서 포용력을 갖고 고려할 결심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1923년 4월 4일, 알레산드리 대통령 연설 내용, 엘 메르쿠리오 신문]



사진 39
루이스 이스끼에르도
외무부 장관
(1922 - 1923)

1923년에는 두 개의 문서에 서명했는데, 이에 따라 1904 협정을 수정하거나 칠레의 영토권을 침해하지 않고 칠레는 이전 약속들과 일관되게 볼리비아와 새로운 협상 내용에 합의했다.



사진 40
에밀리아노 빼구에
로아 라라인
칠레 대통령
(1925 - 1927)

칠레 고위간부와 당국자, 대표자들 중 볼리비아가 독립적인 태평양 접근권을 재획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 내륙국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볼리비아와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칠레의 믿음을 약속한 이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고, 볼리비아의 미래에서 칠레가 관건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가 집권할 때 따끄라와 아리카 지역의 소유권에 대한 북미중재과정이 미국의 프랭크 켈로그 국무부 장관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라인 정부는 아리카의 일부 지역을 통해서 볼리비아가 독립적으로 바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개의 제안을 제출하고 수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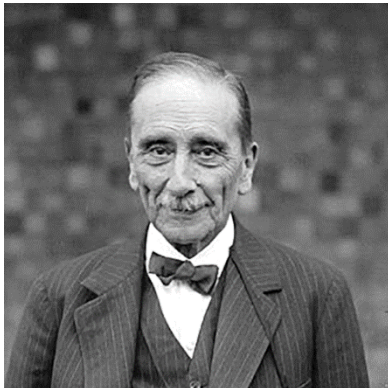


사진 41
벨뜨란 마띠에우
외무부 장관
(1925 - 1926)

북미투표관리위원회가 1883년 협정에 따른 따끄라와 아리카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선언하자, 마띠에우 장관은 전세계 칠레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칠레의 입장을 밝히고 칠레는 아리카의 중요 지역을 볼리비아에 양도할 것이라는 분명한 뜻을 보여주었다.



사진 42
호르헤 마떼
빼구에로아 라라인 정
권의 외무부 장관
(1926-1927)

1926년 프랭크 켈로그 국무부 장관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호르헤 장관은 따끄라와 아리카 상황이 안정되면 볼리비아에 태평양 인접한 항구와 지역을 양도할 것임을 밝혔다. 아리카는 1929년 칠레 영토로 복속되었고, 칠레는 이전에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사진 43
가브리엘 곤살레스 비델라
칠레 대통령
(1946 - 1952)

재임 동안 볼리비아와 칠레는 1950년 6월 1일과 20일 서신 교환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는데, 칠레는 영토에 대한 보상 요구 없이 해양 주권에 대해 볼리비아와 협상에 나서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합의 후 이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진 45
호르헤 알레산드리
로드리게스
칠레 대통령
(1958 - 1964)

재임시절 1950 문서에서 칠레가 한 약속을 1961년 볼리비아 외무부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사진 44
오라시오 워커 라라인
곤잘레스 비델라 정
권의 외무부 장관
(1950 - 1951)

칠레 정부가 앞서 제안하고 약속한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1950년 6월 20일 칠레 문서에 서명하였고, 이로서 칠레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이 입장으로 일관되게 행동하며, 볼리비아에 대한 형제애의 정신으로 볼리비아에 독립적인 태평양 접근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직접 협상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의지가 있다”

[1950년 6월 20일 오라시오 워커 라라인 장관이 주 볼리비아 칠레 대사에게 제출한 문서]



사진 46
마누엘 프루코
호르헤 알레산드리 정권의
주 라파스의 칠레 대사
(1961)

주 라파스 칠레 대사로서 마누엘 프루코는 1961 제안서를 볼리비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1950년 6월 1일과 20일 문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해 주었고 합의문에 비준했다.

1961 제안서에는 “칠레는 언제나 볼리비아의 열망과 칠레의 이익을 만족시킬 방법을 볼리비아와 직접적으로 검토하자고 한 1904년 평화협정에 따른 법적인 사항들을 준수해 왔고, 그럴 의지가 있다.” [1961년 7월 10일 제안서]



사진 47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칠레 대통령
(1973 - 1990)

"건설적인 태도와 상호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의 대통령은 볼리비아 국민들과 칠레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열망을 고려하여, 볼리비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내륙 상황과 같은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결정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 1975년 2월 8일 볼리비아 정부와 칠레 정부가 서명한 차라냐 공동선언

피노체트 대통령은 1975년 2월 8일 차라냐 공동선언에 서명했는데, 그 선언에는 내륙국 상황을 볼리비아에 치명적 문제로 언급했다. 따라서 피노체트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협상을 개시하는데 동의했다. 피노체트 정부는 1975년 8월6일 미주기구 선언을 승인하는데 동의했고 1983년 미주기구 결의 686호와 관련하여 볼리비아와 합의에 이르렀다. 1987년 피노체트 정부는 이른바 "신선한 접근"으로 개최된 협상에 참여했지만, 이후 볼리비아의 해양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걸 거부했다.



사진 48
빠뜨리시오 까르바알
피노체트 정부의 외무부 장관
(1974 - 1978)

1975년 12월 19일 문서를 통해 빠뜨리시오 장관은 볼리비아와 아리카 북부의 협곡 지역 양도를 협상하는데 동의했다. 나아가 까르바알 장관은 1977년 6월 10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볼리비아의 독립적인 해양주권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49
미구엘 슈웨이저
피노체트 정부의 외무부 장관
(1983)

1983년 칠레를 대표하여 슈웨이저 장관은 양국에게 볼리비아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독립적인 출구를 줄 방법을 비롯하여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정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미주기구 686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다. 또한 686 결의안을 논의하고 채택하는데 참여했다.

볼리비아에 대한 가장 최근 칠레 정부의 입장(1990 - 2014)



17년 동안의 군사 통치를 끝낸 칠레는 1990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제도적인 통합의 장을 열었다. 빠뜨리시오 대통령은 이 시기 선출된 첫 번째 대통령이고, 이후 들어선 민주 정부들은 볼리비아의 해양 문제에 침묵했다. 이러한 논리는 실질적으로 시대의 차이, 체제의 차이와 상관없이 수 년 동안 칠레 정부의 입장으로 이어져 내려갔고, 이로서 볼리비아의 내륙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려는 칠레 정부의 인식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사진 50) 빠뜨리시오 아일윈
칠레 대통령
(1990 - 1994)



집권 시절인 2000년 볼리비아와 칠레는 [포르투갈] 알가르베에서 어떤 예외도 없는 의제 논의를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볼리비아 해양 문제를 비롯하여 볼리비아-칠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게 양국이 의제의 틀을 두거나 어떤 제한도 하지 않고 미해결로 남아있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다루자는 취지였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2011년 에두아르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볼리비아의 해양 접근권 보장에 대해 상당한 저항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 하는데 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011년 10월 13일 “하나의 미래 공동체: 칠레, 페루 볼리비아” 서문]

사진 51) 에두아르도 후레이
칠레 대통령
(1994 - 2000)



사진 52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
(2000 - 2006)

리카르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볼리비아 대통령들을 만나 볼리비아의 해양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2011년 리카르도 대통령은 “태평양에 접근하지 못하는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뻔뻔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산타 마리아 장관의 말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13일 “하나의 미래 공동체: 칠레, 페루 볼리비아” 서문]



사진 53
미첼 바첼레르
칠레 대통령
(2006 - 2010과 2014 - 2018)

예외 없는 대화라는 체제 내에서 첫 번째 바첼레르 정부는 2006년 어떤 형태의 조건도 붙이지 않는 13개 핵심 의제에 동의했다. 이 문서는 여섯 번째 의제로 해양 문제를 포함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바첼레르 대통령은 “건설적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 하겠다”는 의사



사진 54
세바스티안 뻬네라
칠레 대통령
(2010 - 2014)

2011년 [브라질] 뵘스 데 이구아수에서 열린 50차 미주공동 시장 정상회의에서 뻬네라 대통령과 모랄레스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뻬네라 대통령은 “양국과 양국의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구체적이고 유용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자는 것이 칠레 정부의 의지이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정부는 13개 핵심 의제의 추진 과업을 물려받았지만, 뻬네라 대통령은 13개 핵심 의제의 추진을 독려했던 정신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볼리비아 해양 문제가 의제의 핵심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뻬네라 대통령은 구체적이고 유용하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제출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하지 않았다. 반대로 앞서 칠레 정부의 행동과 선언과는 반대로 볼리비아와 칠레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미첼 바첼레르*는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바첼레르 정부의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볼리비아와 관련해서 1999년 시작한 대화와 2006-2010년 이뤄낸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볼리비아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우리 바람의 하나이다.”

- 정부 계획[2014. p151]

를 밝혔다.

4.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볼리비아의 해안 주권 소송

2011년 2월 17일 볼리비아 다민족 국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같은 해 3월 23일까지 볼리비아의 해양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칠레가 구체적이고 유용하며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그 제안이 13개 핵심 의제의 열 한 번째 의제 논의를 위한 배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칠레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

국제법정 제소에 대한 볼리비아의 결정

이에 따라 2011년 3월 23일 연설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132년 동안 대화하고 노력해 왔지만, 볼리비아는 독자적인 태평양 접근권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단계 나아갈 필요가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 법은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즉 주권국들이 제소하고 호소하거나 올바른 입장이 무엇인지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 법정이 등장했다. 이러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해양권을 확보하려는 투쟁, 132년 동안 우리의 역사를 관통하는 투쟁을 기억하는데 있어서 이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즉 자유롭고 독립적인 태평양 접근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국제 법정과 국제기구에서 호소한 우리의 의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55 참조]

2011년 4월 11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그의 결정 취지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중요한 국가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직 대통령들의 상임자문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전직 당국자들도 국내외적 여론을 모아내는데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56 참조]

같은 해 6월, 모랄레스 대통령은 8명의 전직 외무부 장관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모두 볼리비아 해양권 소송이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는 중요한 국가적 소송이라는데 동의했다. 이 회동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해양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을 모아내고 문서를 작성하고 입장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보호위원회와 전략적해양보호부 설치

2011년 4월 5일 법령 834호를 통해 해양권 복원과 관련한 전략과 정책을 기획하는 책임 기구로서 국가해양보호위원회와 해양권 복원과 관련한 정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법정에 제출한 소송을 준비하고 그러한 소송으로 발생할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데 협력하는 책임을 맡은 특별기구로서 전략적해양보호부가 설치됐다.

신청서 작성

볼리비아 해양권을 신청하는 첫 번째 단계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칠레 정부를 기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저명한 국제법 분야의 국제자문단, 해양보호위원회와 함께 전략적해양보호부가 이끌어낸 노력의 결과였다.

전략사무소는 볼리비아의 해양권 소송을 지원하는 가능한 법적 대안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국내외 다양한 보관소에서 수집된 엄청난 양의 역사적이며 법률적 문서들을 철저하게 편집하고 검토하고 체계화하

였다



사진 55. 2011년 3월 23일 연설 중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대통령 신 전직 대통령과 전직 외무부 장관들과의 협의



사진56. 첫째 줄,전직 대통령들, 호르헤 구이로가, 까를로스 메사 에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 하이메 빠스,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구이도 빌도소. 두번째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외무부 장관들, 까를로스 이뚜랄데, 아구스틴 사베드

라, 하비에르 무리요 데 라 로차,외무부 장관 다비드 초께우안까, 까를로스 사베드라, 아르만도 로아이사, 구스따보 뻬르난데스



사진 57. 2013년 4월 24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볼리비아 대표단

대리인 지명

2013년 4월 3일, 볼리비아 정부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벨트세 전 대통령을 볼리비아 다민족국가를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전권을 가진 특별 대사로 지명했다. 특별 대사는 볼리비아의 신청서 내용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신청서 제출

2013년 4월 24일 특별 대사와 외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볼리비아 고위급 대표단이 국제연합기구 체제의 분쟁을 조정하는 최고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 및 재판권

볼리비아는 칠레와 볼리비아가 태평양 분쟁에 관한 1948 아메리카 협약이나 “보고타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자신들의 분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볼리비아 사건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58 참조]

국제사법재판소 31조는 당사국은 조약의 해석, 국제법적 문제,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국제의무 위반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보상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해 당사국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인 모든 분쟁에서 본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 58.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평화의 궁전



해양주권 주장의 법률적 근거

볼리비아는 해양권을 주장할 때 구체적으로

합의문과 외교적 관행, 고위급 대표자들의 일련의 선언을 통해서 볼리비아와 독자적인 해양접근권에 대한 협상을 칠레가 스스로 약속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칠레 정부의 약속으로는 1895년 5월 18일 영토 이전에 관한 협정과 그 부속서협약서, 1920년 1월 10일 행동, 1950년 6월 1일과 20일의 문서 교환, 1975년 2월 8일 차라냐 공동선언, 1975년 12월 19일 칠레 외교문서 등이다. 언급된 법률 문서들은 모두 칠레가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협상의 방식으로 볼리비아의 해양 봉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는 결정적 증거물이다.

신청서 제출

볼리비아 정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공표할 것을 요청했는데,

- 1) 칠레는 볼리비아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태평양 접근권을 보장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볼리비아와 협상할 의무를 가지며,
- 2) 칠레는 앞서 언급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 3) 칠레는 볼리비아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태평양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를 가지고 적절한 시간 안에 신속하고 공식적이고 효율적으로 앞서 언급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면답변 제출 시한 확정

2013년 6월 12일, 볼리비아 대리인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벨트세 와 칠레 대리인 펠리페 볼네스 세라노가 국제사법재판소 관계자와 만나 소송절차 중 서면 단계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 합의했다. 같은 해 6월 18일 재판소는 볼리비아 다민족국가의 소송 취의서는 2014년 4월 17일까지, 칠레공화국의 취의서에 대한 답변은 2015년 2월 18일까지로 양국의 서면 답변 제출 시한을 확정했다.

볼리비아 소송 취의서 접수

볼리비아 취의서는 볼리비아의 독립적인 해양접근권을 논의해야 하는 앞서 언급한 칠레의 의무에 대한 증거들과 함께 그 의무를 강조하는 사실 관계와 법적 근거들을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2014년 4월 15일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벨트세 대리인이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다비드 초께우앙카 외무부 장관과 동행하여 취의서를 접수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취의서에는 “해양 주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볼리비아 사람들의 꿈과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볼리비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있음을 진실로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59, 참조]

사진 59. 2014년 4월 15일 취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평화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랄레스 대통령



사진 60. 2014년 3월 12일 산티아고에서 “볼리비아에게 바다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까우뽄리칸 극장에 모인 칠레 군중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여하기 위해 두 차례(2006년과 2014년) 산티아고를 방문했을 때, 칠레의 지식들과 많은 중요한 사회단체가 “볼리비아에 바다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칠레의 많은 진보 세력들은 볼리비아가 독자적인 해양접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볼리비아 해안 주권 주장에 대한 지지

볼리비아 국제사법재판소에 취의서를 접수한 후에 외무부 장관과 대리인을 동행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대통령 궁에서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외무부장관 및 관계자들, 사회운동 대표자들과 일련의 회의를 갖고 취의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리인의 설명을 들은 참석 인사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볼리비아의 주장에 전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가 전체가 정치적 차이, 환경,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볼리비아의 해양권 요구가 국가적인 사안이자 국가의 정책이라는데 동의하고 정부의 의지를 통과시켰다.

해양 주권 요구에 대한 국제적인 입장

2014년 4월 28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까를로스 메사 전직 대통령을 해양권 요구를 위한 볼리비아의 공식 대표자로 임명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칠레를 제소한 소송에 갈려있는 배경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임무를 위임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외무부 장관, 대리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울이는 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었다. [사진61 참조]



사진 61. 까를로스 메사 전직 대통령이 국제사회 앞에서 볼리비아의 공식 대리인으로서 볼리비아 해양 소송의 범위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략적해양변호부 사무총장 비준(2014)

2014년 5월 9일, 2013년 10월 이후 운영되어온 전략적해양변호부의 사무총장에 에밀슨 깔데론이 임명되었다. 이 전략 기관은 해양권 주장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지원하고 방어하고 정보를 확산하면서 해양변호위원회와 대리인,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공식 대표자를 지원하는 임무를 책임진 특별 실무 팀으로 구성되었다. [사진62 참조]

미주기구 회의에서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성명서(2014)

2014년 6월 4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44차 미주기구 총회에서 볼리비아 외무부 다비드 초깨우앙가 장관



은 볼리비아의 해양권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초깨우앙가 장관은 이 싸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던 볼리비아와 칠레의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견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소송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의 미래에서 태평양 전쟁의 상흔을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관은 볼리비아의 목적은 “칠레와의 대화하고 싶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63 참조]

사진 62. 에메르손 깔레론 구스만, 전략적해양변호부 사무총장



사진 63. 파라과이에서 열린 제44차 미주기구 총회에서 발언 중인 다비드 초깨우앙가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역사책을 읽으면, 전쟁이 어떻게 끝났고,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된다.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이 다른 역사, 즉 전쟁이 없는 역사, 대화가 있는 역사, 다툼을 평화롭게 해결한 역사를 읽을 수 있도록, 볼리비아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속에서 우리의 형제국인 칠레가 태평양 전쟁과 그 결과로 남겨진 상처들에 종지부를 찍고 그 상처들을 없애고 지울 수 있도록 우리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를 요구한다.”

다비드 초췌우안까

2014년 6월 4일 연설 [부속서 21]

5

고립으로 인한 결과

1879년 2월 14일 칠레의 침략과 그로 인해 해양 영토를 상실하면서 볼리비아는 어떤 기한도 없이 세계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해안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볼리비아의 사회경제 발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약 1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국토의 상실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지역과 그 인접한 해안 지역의 자연 자원을 빼앗겼다.

1879년 칠레의 침략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자원의 손실

구아노와 초석

볼리비아의 아따까마 해안 지역은 구아노와 질사 칼륨의 매장이 풍부했다. 구아노는 천연비료로서의 성분 때문에 중요한 교역 상품이 되었다. 구아노 개발 붐은 산업혁명으로 초석이 구아노를 대신한 대략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산업혁명과 함께 볼리비아 해안 지역과 페루의 남쪽 지역과 연결되어 있던 칠레는 급속하게 세계 제1의 초석 생산국이 되었고 40년간 이 광물의 개발과 교역을 독점하였다. 초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칠레는 초석 수익이 크게 증가하여 이어지는 경제 개발과 정치적 결속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은

까라폴레스 광산이 볼리비아의 리또랄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많은 칠레인들이 이주해왔다.

19세기 중반, 카라콜레스 은 생산량은 뽀또시 세로 리고 광산의 은 생산량보다 30% 가량 많았다(카라콜레스에서 은 생산량은 60,000~80,000을 기록했다). 이러한 은 생산 붐은 칠레의 침략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수 십 년 동안 칠레는 직접적 이득을 얻었다.



사진 64. 초석 채취

구리

볼리비아의 리또랄 지역은 구리 생산지로도 알려졌는데, 작은 규모로 개발되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리 매장지 중 하나가 볼리비아의 영토였던 곳에서 발견되었다. (갈라마 인근의) 추끼까마따 지역은 현재 세계 최대의 노천광이다. 20세기에 시작된 거대한 개발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살바도르 아옌데 전 칠레 대통령은 구리를 “칠레의 월급”으로 부를 정도였다.



사진 65. 카라코렐스 광산의 공장

20세기 구리 개발로 얻은 수익은 칠레 총 수출액의 50%에 달했으며 21세기 첫 10년 동안 구리 수출과 그에 따른 수익은 칠레 총 수출액의 50~60%에 이르고 있다. [사진66 참조]

1960년부터 2000년까지 구리 수출로 칠레는 2180억 달러 (현재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수치임)를 벌어들였다. [P 멜러, 2003년, 꼬델코 자료]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십년 동안 칠레는 3460억 달러 (현재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수치임)를 벌어들였다. 이 수치는 현재 가격으로 하면 원래 볼리비아 영토였던 곳에서 추출한 구리로 칠레는 9000억 달러를 벌었음을 보여준다.



사진 66. 추끼까마따 광산

리튬

오늘날 칠레는 또 다른 자연자원인 리튬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데 리튬은 공식적으로 볼리비아 영토였던 곳에서 발굴되고 있고, 국제 시장에서의 수요가 높다. 리튬의 국제적 수요는 2000년대 해마다 평균 7~8%로 성장했고, 가격은 1999년 톤 당 1760 달러에서 2008년 6000달러로 상승했다. 칠레는 세계에서 첫 리튬 생산국이다. 2010년 칠레의 생산량은 전 세계 총 생산량의 43%를 차지했다. 볼리비아가 이 귀중한 자원 매장량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해양 접근권이 없고 이로 인해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력이 떨어져 칠레만큼 이익을 못 봤을 수 있다.

해양자원

해양에서 고립되어 바다의 풍부한 어류 자원을 빼앗기게 된 볼리비아는 해양 자원을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었다.

자유통행제도

볼리비아가 칠레 영토나 항구를 통해서 외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족했던 자유통행제도는 칠레가 항구를 민영화하면서 더욱 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칠레는 볼리비아와 했던 의무를 민간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아래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아리카와 안토빠가스따 항구에서 제한된 관세 자주권

이 두 항구에서 볼리비아의 자주권은 칠레 당국이 원하거나 편리할 때 볼리비아 화물을 스캔하고 검사하는 자유재량에 따른 확인 작업으로 인해 끊임없이 침해를 받았다. 볼리비아의 수출입 업자들은 이러한 검사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컨테이너 한 대당 검사 비용이 125달러에서 800달러에 달한다. 더구나 칠레는 볼리비아의 출입국사무소를 항구 밖으로 옮겨서 이들 항구에서 볼리비아의 존재를 없애려 해왔다.

항만서비스의 독점

칠레는 아리카와 안토빠가스따 항구의 항만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민간업자에게 넘겨서, 그래서 볼리비아 정부가 보다 편리한 비용과 조건으로 다른 업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독점 공급업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항구에서 위험 화물(IMO) 보관 비용

위험 화물에 대한 판단을 칠레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일부가 위험화물일지라도 전체 컨테이너에 위험 화물 비용을 청구한다.

본래 위험 화물은 즉시 철거하거나 수송한다. 따라서 항구에서 이러한 물건을 보관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이럴 때 우선운임에서 제외된다.

수송 중인 볼리비아 화물에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세금 부과

칠레는 빈 컨테이너로 돌아오거나 수송 중인 볼리비아의 모든 화물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붙였다. 이는 볼리비아 화물이 누리는 면세 혜택을 칠레가 지켜주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안토파가스따와 이끼게 외부 부지에 볼리비아 화물 배치로 비용 증가

칠레는 볼리비아 화물들의 정리와 해체 작업을 뽀르떼술레오(안토파가스따에서 30 킬로미터)나 알또 오스빠시오(이끼게에서 13.5 킬로미터)처럼 항구 외곽 부지에 배치하여 볼리비아 기업들의 항구 사용을 제한하면서 선적의 지연과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

볼리비아는 안토파가스따 항구를 통해서 광물을 수출했는데, 광물이 집산지로 모아지는데 이중 처리 비용이 들면서 결국 운송 비용이 올라갔다.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차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1932-1935), 칠레는 주요하게 두 번의 무기 수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기 운송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볼리비아는 페루 영토를 통해 무기를 수입해야 했는데, 그로 인해 돈과 시간과 인명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1952년과 53년 안토파가스따 사법부는 그 도시에 있는 볼리비아 출입국관리소에 보관하고 있던 볼리비아의 탄광 지역으로 운송 예정이었던 상품의 선적을 제한하고 중단했다.

아리카-라빠스 철로 운행 중단

아리카에서 라빠스 간 여객운송 서비스는 1997년에 중단되었고, 이후 2001년 칠레 지역의 철도 화물 운송 서비스도 중단되었다. 그때부터 철도의 운행은 복원되지 않았고 볼리비아가 태평양에 접근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었다. [사진67과 6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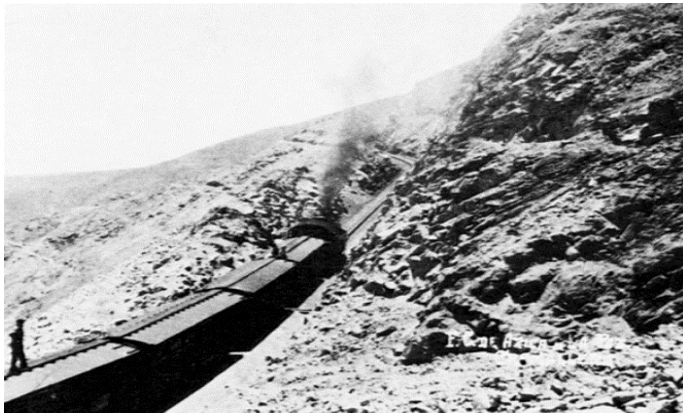


사진 67. 아리카와 라빠스를 운행 중인 철도의 역사적 사진



사진 68. 아리카 - 라빠스 철로의 칠레 지역.
운행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아리카 항구와 라빠스를 연결하는 철도는 1913년에 착공되었다. 볼리비아 지역의 철로는 1928년 5월 13일 볼리비아 정부에게 이양되었다.

1997년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내륙 국가의 경우 해양이 봉쇄된 조건으로 인해 대략 년 성장의 0.7%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고립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 국가는 연안 국가와 비교해서 불이익이 많다. 해양 자원을 빈곤하고 해양 교역이 한계를 가지게 되면서 내륙 국가는 다른 국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송 비용과 물류 비용이 훨씬 높다. 이로 인해 외국과 교

역 비용이 높아진다.

소득수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내륙국 대부분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연안 국가는 내륙국보다 평균 GDP가 66% 높았다.

해외무역

내륙국은 상품을 운송하는데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인접국을 통해 상품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직접 비용이 발생하고 국경을 넘거나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소용되는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해양 접근권을 빼앗겨 운송과 물류 관련 비용이 높은 볼리비아는 외국과의 교역 비용도 더 비쌀 수밖에 없다. [2012년] 세계 은행의 잡지 '두잉 비즈니스'에 따르면, 컨테이너 당 볼리비아의 수출 비용은 칠레와 비교해서 55.7%, 페루와 비교하면 60%가 더 비싸다.

볼리비아 화물은 주로 칠레 항구를 통해 운송한다. 이는 화물을 해외로 보내는데 필요한 통관비용이나 행정 처리 비용과 함께 볼리비아가 부가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충분하지 않는 항구 인프라나

직원의 부족, 출입국관리소에서의 과도한 지연으로 인해 통과국에서 머물러야 하는 수송 회사의 숙박과 식사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볼리비아의 국제운송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경에서 칠레 세관소의 과도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관리 업무는 볼리비아 수출품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운송비용

국제적으로 내륙국의 통상 관련 운송 비용은 해안국보다 15%가 높다.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운송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로, 대륙 평균보다 31% 높다.

2013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칠레 세관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업무를 중지하고 볼리비아 국경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의 운행을 막았다. 약 2000대의 화물 트럭이 꼼짝없이 발이 묶여, 볼리비아 영토에 최소 20 킬로미터 길게 주차장을 형성했다. 이러한 차질은 볼리비아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수출기업들은 마감을 맞추지 못해 계약을 위반하고 (상하기 쉬운) 상품을 버림으로써 더 높은 비용이 발생했다. [사진69 참조]



사진 69. 2013년 11월 28일 칠레 국경으로 넘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땀보 깨마도 볼리비아 국경선에 줄지어 서 있는 대형 화물 트럭들

외국인 투자

내륙국 대부분은 경제적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 수 없다. 아래 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평균 투자 흐름에서 내륙국은 전체 국제 투자의 2.35%라는 아주 작은 퍼센트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표: 외국인 직접투자
10달러

	2009	2010	2011
해안국	1169.8	1280.8	1489.6
내륙국	28.0	28.0	34.8

출처)UNCTAD 자료에 기반 자체 제작

남미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상당한 혜택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국들은 최소의 자원만을 받

았다.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장 낮은 나라들이다.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에 따른 그 외 결과

인간발전지수

인간,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서 볼리비아가 겪는 어려움이 단지 강요된 내륙국 상황으로만 발생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한 봉쇄 상황이 전반적인 발전 잠재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2012년 UN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내륙국 개발도상국이 인간발전지수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런 측면에서 2010년 인간발전지수 국가 보고서는 1975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동안 볼리비아는 중간 정도였음을 보여주었다. 1980년 볼리비아의 인간개발지수는 0.489였으나, 2013년 0.675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은 무엇보다 의료와 교육 분야의 향상과 같은 사회 요소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6년부터는 경제적 요소(GDP 성장)가 상승을 이끌었다. 어쨌든 간에, 볼리비아 독자적인 해양 접근권을 가지고 해외 무역을 확대할 수 있으면, 볼리비아의 경제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인간 개발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여전히 남미의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다. 남미에서 볼리비아는 2009년에 에콰도르와 파라과이 다음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나 2012년 남미의 33개국 중에서 27위를 차지했다.

6

연대표

1542 페루 부왕령이 설립되고 왕립심의원들로 나누어졌다.

1559 페루 부왕령의 관할권 하에 차르카스 왕립심의원(오늘날의 볼리비아 지역)이 설립되고 아타카마 구역과 해안으로 이루어졌다.

1776 차르카스 왕립심 의원은 아따까마 구역으로 구성되어 이후 리오데라בל라따 부왕령 관할권으로 넘겨졌다.

1782 리오데라בל라따 부왕령은 여덟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었고 아따까마 해양주권을 포함하는 뽀또시 행정구역이 이에 속했다.

1825 볼리비아는 독립했고 1810년 점유물유보의의 원칙에 따라 이전의 차르카스 왕립심 의원의 국경을 기반으로 영토가 규정되었다.

1829 뽀또시에서 자치권이 있는 리토탄주로 분리되었다.

1833 11월 8일 볼리비아와 칠레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했고 볼리비아의 태평양에 대한 해양 주권을 인정했다.

1842 칠레는 10월 31일 법을 통해서 볼리비아 아따까마 영토에 매장된 구아노가 자국의 소유임을 선언했다.

1843 볼리비아는 각각의 조항을 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1842년의 법에 항의했고 철회를 요구했다.

1866 8월 10일 볼리비아와 칠레는 위도 24도에서 국경을 정하는 첫 번째 조약을 체결했고 위도 23도와 25도 사이의 구아노, 금속, 광물을 공동 개발할 것으로 규정했다.

1867 리또랄주는 라마르와 아따까마 두 주로 나뉘었다.

1873 볼리비아는 안또빠가스따 질산염철도기업에 볼리비아 해양 영토의 초석 개발을 허가했다.

1874 8월 6일 볼리비아와 칠레는 영토와 관련한 두 번째 조약을 체결했고 위도 24도에서 국경을 확정했다.

1875 7월 21일 1874년 조약의 추가의정서를 체결하고 조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중재에 부쳐질 것을 규정했다.

1877 쓰나미에 이은 지진으로 볼리비아 해양 영토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1878 볼리비아 정부는 앵글로-칠레의 안또빠가스따 질산염철도기업에게 수출되는 초석 100kg 당 10센트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이전 해에 발생한 자연 재해로 인한 결과를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1878 앵글로-칠레 기업은 볼리비아 법정에 항소하지 않고 외교적 보호를 받기 위해 칠레 정부에 의지했다.

1879 2월 14일 칠레는 이미 합의한 중재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볼리비아의 안또빠가스따 항구를 침략했다.

1883 칠레와 페루는 안콘조약을 체결해 칠레가 따라빠까에 대한 확고한 소유권을 가지고 따끄나와 아리가 지역은 국민투표로 결정할 때까지 칠레 정부 관할 하에 남기기로 결정 했다.

1884 4월 4일 볼리비아와 칠레는 정전 협정을 체결했다.

1895 5월 18일 영토양도조약을 체결해 칠레는 볼리비아에 따끄나와 아리가 주를 양도하거나 비또르만부터 까마로네스 협곡까지 양도할 것을 결정했다.

1900 칠레의 라빠스 전권대사 아브라함 고니그는 볼리비아에 항구가 포함되지 않은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1904 10월 20일 볼리비아와 칠레는 평화와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1910 다니엘 산체스 부스따만떼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은 페루와 칠레 대표에게 따끄나와 아리가 지역을 볼리비아에 양도할 것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보냈다.

1919-1922 파리평화회의와 국제연맹에 볼리비아는 해안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고 칠레는 1904년 조약과는 독립적으로 직접 교섭을 제안했다.

1920 1월 10일 1904년 조약과는 독립적으로 볼리비아의 태평양 해양 주권을 보장하는 협정의 기반을 제안하는 구띠티에레스-베요 꼬에시도 법안이 체결되었다.

1923 루이스 이스끼에르도 칠레 외무부 장관은 칠레가 1904년 평화조약을 수정하지 않고 자국의 영토 연속성을 가로막지 않고 볼리비아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1926 프랭크 B. 켈로그 미국무장관은 칠레와 페루 정부에 따끄나와 아리가 지역을 볼리비아에 양도할 것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칠레는 제안서를 고려해 보겠다고 동의했다.

1929 칠레와 페루는 리마조약을 체결해 칠레가 아리가 지역을 소유하고 페루가 따끄나 지역을 회복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양국은 사전 동의 없이 제 3국에게 영토의 일부나 전체를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추가 의정서를 체결했다. 제3국은 볼리비아를 언급한 것이 분명하다.

1949 가브리엘 곤잘레스 비델라 칠레 대통령은 볼리비아 대표에게 해양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상에 기꺼이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950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외교적 노력으로 산티아고의 알베르토 오스트리아 구띠에레스 볼리비아 대사와 오라시오 워커 라라인 칠레 외무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문서(6월 1일과 20일)를 교환했다. 이 문서에서 양국은 영토

보상 없이 볼리비아와 태평양 접근권에 대해 협상할 것을 동의했다.

1961 칠레는 볼리비아에 제안서를 보내 1950년 볼리비아의 태평양 접근권에 대한 협상에 동의했음을 재확인했다.

1962 볼리비아는 칠레 제안서에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칠레는 볼리비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라우카 강물(볼리비아와 공동소유의 강)을 전용해 양국 간 외교관계의 균열을 야기했다.

1975 볼리비아와 칠레는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약속했다.

1975 볼리비아의 150주년 행사에서 미주기구 상임위원회는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태는 대륙의 문제임을 인정했다.

1975 칠레는 볼리비아에게 아리카 북부지역의 볼리비아 영토와 맞닿은 해양 영토를 양도할 것을 제안했다. 1929년 리마 조약의 추가의정서에 따라 칠레는 페루와 상의했다.

1976 페루는 반대 제안을 제출했고 칠레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978 차라냐 협상이 결렬되었다. 볼리비아는 칠레의 비협조적 태도에 따라 외교 관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1979 미주기구 9차 총회에서 볼리비아의 해양주권 문제는 반구 상의 문제임을 언급하는 결의 426호를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다시 한 번 양국이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것은 볼리비아가 태평양 접근권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1983 미주기구 총회에서 결의 686호가 채택되었고 이 결의안에서는 양국이 다시 한 번 볼리비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 조항은 볼리비아와 칠레가 협상하고 동의한 후 채택되었다.

1986 볼리비아와 칠레의 외무부장관은 여러 차례 만나 “신선한 접근”으로 알려진 협상 과정을 주도했다.

1987 볼리비아와 칠레 대표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만났다. 볼리비아는 통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재개했고 대안으로 소수민족의 거주지를 양도할 것을 제안했다. 칠레는 볼리비아의 제안을 고려한 후 강력히 거부했다.

2000 볼리비아와 칠레 외무부 장관은 포르투갈의 알가르베에서 만나 예외없이 새롭게 의제를 준비하는 것에 동의했다.

2004 멕시코 몬트레이에서 열린 미주정상회담 기간 동안 까를로스 메사 볼리비아 대통령은 볼리비아 해양주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5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벨트세 볼리비아 대통령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은 의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대화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났다.

2006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13개 의제를 발표했고 해양주권 문제를 6번째 의제로 두었다.

2011 칠레와의 대화에서 진전이 없고 양국 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칠레 측의 태도로 인해 3월 23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1 4월 5일 해양보호위원회와 전략적해양보호부(DIREMAR)가 창설되었다.

2013 4월 3일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벨트세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볼리비아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2013 4월 24일 볼리비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칠레를 상대로 제소했다.

2014 4월 15일 볼리비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7

부속서

부속서 1

칠레와 볼리비아 국경 조약, 1866년 8월 10일 체결됨

칠레공화국과 볼리비아공화국은 아따까마 사막의 국경문제와 해안 지역의 구아노 매장량에 대해 우호적이고 상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원한다. 문제 해결을 통해 양국간의 이해, 우호, 상호적으로 단결함으로 친밀한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양국은 합리적인 이유로 각국이 소유하는 영토 일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상기된 문제를 최종적이고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국은 각국의 전권대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칠레 대통령, 알바로 꼬바루비아스 외교부장관, 볼리비아공화국 대통령, 후안 라몬 무뇨스 까브레라 특명공사이자 주 칠레 볼리비아 전권공사

서로 정식으로 전권공사의 교류가 있는 후 다음의 조항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1조 칠레와 볼리비아의 국경은 아따까마 사막에 있으며 지금부터 국경은 남위 24도에 있다. 즉 태평양 연안부터

칠레의 동쪽 국경까지 앞서 언급한 위도 24도로 확장되어 남쪽으로는 칠레와 북쪽으로는 볼리비아가 소유권과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다. 이 영토에 한해서 소유권을 가진 국가가 관할권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국 간의 정확한 국경 합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는 체결국에서 절반씩 임명한다. 국경이 정해지면 가시적이고 영구적인 표시가 땅 위에 표시된다. 비용은 칠레와 볼리비아 정부가 공동으로 지불한다.

2조. 1조에서 규정된 영토 구분과는 별도로 칠레공화국과 볼리비아공화국은 메히요네스에서 발견된 구아노를 동등하게 분배한다. 남위 23도와 25도에 포함된 영토에서 발견된 같은 종류의 광물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며 지정된 영토에서 추출한 광물에 대한 수출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조. 볼리비아공화국은 메히요네스만과 항구에 대한 권리와 산업과 통상의 발전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직원의 수를 갖춘 세관 설치를 약속한다. 이 세관은 유일한 회계사무소로 구아노 생산물과 상기 조항에서 다루는 금속에 대한 수출세를 징수할 수 있다.

칠레 정부는 감독에 대한 전권을 받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회계관을 임명할 수 있고, 상기한 메히요네스 세관의 수입 계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 직접 분기별로 혹은 양국이 규정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2조에서 언급했듯이 이윤의 일부는 칠레에 종속된다. 볼리비아 정부는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칠레는 상기 조항에서 제시된 생산물 징수를 목적으로 24도와 25도 사이에 포함한 영토에 회계사무소를 세워야 한다.

4조. 남위 24도와 25도 사이에 포함된 영토에서 나고 메히요네스 항구에서 운송되는 모든 생산물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칠레에서 나고 메히요네스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천연산물에는 수입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조. 개발 시스템과 구아노 판매, 동일 조약 2조에서 언급된 광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체결국간에 결정할 것이며 특별조약이나 양국의 편의와 적합성을 고려해 정한다.

6조. 조약 체결국 간 분할된 영토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다른 국가나 기업 및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체결국 중 한 국가가 영토를 판매 하고자 한다면 다른 체결국만이 구매자가 될 수 있다.

7조. 국경문제로 수반되는 손실을 고려해 1863년 2월 18일자로 메히요네스의 구아노 지대에서 처음 일한 기업의 개인과 칠레 당국의 명령으로 일이 중단된 개인에게는 조약 체결국이 메히요네스 세관의 순이익의 지불 가능한 10%인 8만달러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한다.

8조. 현 조약은 비준되고 40일 안에 혹은 가능하다면 더 빠르게 라빠스나 산티아고에서 비준안이 교환된다.

이 조약은 1866년 8월 10일 산티아고에서 볼리비아와 칠레공화국의 전권대사의 입회 하에 체결되어 봉인되었다

서명

알바로 꼬바루비아스

J.라몬 무노스 까브레라

부속서 2

볼리비아와 칠레 국경 조약, 1874년 8월 6일 [.....]

1조 바다부터 안데스 산맥의 대륙 분수계인 위도 24도는 볼리비아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간의 국경선이다.

2조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해 빠시스와 무히아 위원이 설립한 위도 23도와 24도선은 1870년 2월 10일령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까라폴레스의 광물 매장량이나 상기한 두 위도 사이 외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른 광물 매장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협상 체결국이 각각 임명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국에서 임명한 두 명의 전문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두 명이 합의로 임명한 세 번째 전문가가 결정하고 두 전문가가 세 번째 전문가에 대해 합의를 못할 경우 브라질 황제가 세 번째 전문가를 임명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광물 매장량은 명시된 위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조 상기된 구역 내에 현존하는 구아노 매장량이나 미래에 발견될 매장량은 볼리비아와 칠레가 동등하게 분할한다. 종전에 사용한 방식과 형식으로 양국 정부의 공동 합의에 따라 개발 시스템, 행정, 판매를 지속한다.

4조 상기된 지역에서 개발되는 광물에 부과되는 수출세는 현재 시행중인 세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칠레 시민, 산업, 자본은 무엇이든 현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조건은 25년간 지속된다.

5조

위도 23도와 24도 사이의 볼리비아 연안 지역을 통해서 수입되는 칠레의 천연 산물에 대한 세금을 모두 면제하며 상호적으로 위도 24도와 25도 사이의 칠레 연안 지역을 통해서 수입되는 볼리비아의 천연 산물에 대한 세금도 면제한다.

6조 볼리비아공화국은 메히요네스와 안또빠가스따를 연안지역의 주요 항구로 둔다.

7조 칠레가 위도 23도와 24도 사이에 포함된 영토에서 발견된 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볼리비아는 이를 위해서 지명된 중재 재판소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양국은 이를 위해 브라질 황제를 임명할 것에 동의한다.

8조 볼리비아공화국은 체결국이 임명한 두 명의 위원이 수행하는 합의 이후에 칠레공화국에 금액을 지불한다. 1866년 조약 2조에서 언급한 수출권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금액은 비준된 조약을 교환하는 날까지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지불되는 금액이나 금액의 일부가 정확한 합의에 허용될 수 없거나, 합의를 위한 요소가 부족하거나, 기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기된 위원이 공정과 선의의 원칙에 따라 수정하거나 완성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브라질 황제가 결정한다.

9조 오늘 날짜 이후로 1866년 조약의 내용은 폐기된다.

10조 현 조약은 체결국에서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안은 3개월 내에 수끄레시에서 교환해야 한다.

이 조약은 1874년 8월 6일 수끄레에서 볼리비아와 칠레공화국의 전권대사의 입회 하에 체결되어 각각 봉인하였다.

서명

마리아노 바쁘띠스따

까를로스 워커 마르띠네스

부속서 3

볼리비아와 칠레 정전 협정, 1884년 4월 4일 체결됨 [.....]

1조 칠레공화국과 볼리비아공화국은 무기한 휴전을 공표하고 그 결과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한다. 한 국가가 상대국에게 적대 관계를 재개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적어도 일년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직접 통지 하거나 우방의 외교관을 통해서 한다.

2조 칠레공화국은 이 조약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위도 23도와 로아 강 입구 사이에 위치한 영토를 칠레 법에 따라 계속 통치한다 [...] 문제가 생길 경우, 양국은 기술자 위원단을 임명해 결정된 경계표로 하여금 국경을 수정한다.

3조 정부 포고령이나 시민과 군 당국의 명령으로 칠레 시민에게서 몰수한 재산과 물건은 즉각적으로 원래의 소유주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이 중 볼리비아 정부가 받은 재산 또한 반환하고 이를 문서로 남긴다.이 과정을 통해서 칠레 시민이 받은 피해는 이해 당사자가 볼리비아 정부에게 제출할 경우 보상받는다.

4조 볼리비아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과 피해에 대한 배상 금액에 대한 분쟁 내용은 중재 위원회로 제출된다. 중재 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명은 칠레에서, 한 명은 볼리비아가 지명하며 한 명은 칠레에 거주하는 중립국의 대표 중에서 서로가 합의한 사람으로 지명한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빠르게 임명된다.

5조 칠레와 볼리비아 간의 통상 관계를 회복한다.

반대되는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칠레와 볼리비아는 최혜국 대우에 따라 상업 이익과 자유를 누린다.

6조 아리가 항구에서 볼리비아 소비재로 들어오는 외국 상품의 경우 칠레의 관세를 따라 세금을 지불한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세금으로 받은 총 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25%는 따끄나와 아리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에서 받은 세금으로 적용된다. 경상비와 75%는 볼리비아에게 주어진다 [...]

7조 특히 칠레가 계속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경계선에서 한 국가의 하위 당국이 현재 휴전 협정으로 정해진 상황을 바꾸려 하는 행동에 대해 공지 또는 요청으로 각각의 정부가 진압하거나 처벌한다.

8조 휴전협정을 공표하며 계약 당사국의 목표는 공고하고 안정적인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양국은 서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할 것을 서약한다.

볼리비아 정부는 40일 이내에 이 협정을 비준하고 6월 내에 산띠아고에서 비준안을 체결한다.

1884년 4월 4일 발빠라시오에서 칠레 외무부 장관과 볼리비아의 전권대사는 각각의 권한으로 휴전 협정에 서명했다.

서명

A. 베르가라 알바노

벨리사리오 살리나스

벨리사리오 보에또

부속서 4

볼리비아와 칠레 영토양도조약, 1895년 5월 18일

칠레공화국과 볼리비아공화국은 양국을 단결시킬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볼리비아의 요구와 향후 발전, 상업적 번영을 위해 자유로운 바다 접근권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해 영토 양도에 대한 특별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권대사를 임명한다.

칠레 대통령은 루이스 바로스 보르고뇨 외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볼리비아 대통령은 에리베르토 구띠에레스 특사이

자 볼리비아의 전권공사를 임명했다.

부여 받은 자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을 합의했다.

I.

안팎 조약이나 직접 교섭을 통한 국민투표의 결과로 칠레공화국이 따끄나와 아리카 지역에 대한 통치권과 영구적인 주권을 획득한다면 칠레는 두 지역을 볼리비아공화국에 같은 방식으로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2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획득한 같은 지역을 포함한다.

볼리비아공화국은 영토 양도에 대하여 보상의 형태로 총 5백만 은 페소, 25그램 중량과 10분의 9피노를 지불한다. 특히 이번 지불금을 위해 아리카 지역의 총 관세 수입의 40%를 따로 떼어 둔다.

II.

상기 조항의 규정대로 양도가 이루어진다면 칠레공화국의 북쪽 국경이 까마로네스에서 비토르 협곡까지 확장된다. 이는 바다에서부터 현재 볼리비아공화국과 분리된 지역인 국경까지 이다.

III.

이전 조항에서 언급된 사항을 위해서 칠레 정부는 볼리비아와 공동으로 혹은 자국 스스로 따끄나와 아리카 영토에 대한 최종적인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IV.

칠레공화국이 국민투표나 직접 교섭을 통해서 따끄나와 아리카 지역에 대한 최종적인 주권을 획득할 수 없다면 칠레는 비토르만부터 까마로네스 협곡까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토와 25g 중량과 10분의 9 피노의 5백만 은 페소의 금액을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

V.

이 조약에 의거하여 양도하는 영토의 정확한 경계는 특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VI.

4조에 따라 양도된 영역에서 향후 발견되는 질산염 매장량은 양국간의 특별 합의를 통해서 다른 합의 사항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 칠레 공화국 영토에 매장된 질산염 매장량이 완전 소진된 후를 제외하고는 개발되거나 양도되지 않는다.

VII.

이 조약은 양국이 체결하는 평화와 통상 조약과 동시에 서명되어 비밀에 부쳐지며 체결국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다.

VIII.

이 조약 비준서는 6개월 내에 교환하며 하며 교환은 산티아고에서 이행한다.

이 조약은 칠레의 외무부 장관과 볼리비아의 특명전권공사의 입회 하에 1895년 5월 18일 산티아고에서 서명되어 봉인되었으며 특별 조약의 두 사본도 각각 봉인되었다.

서명

루이스 바로스 보르고뇨

에리베르도 구띠에레스

부속서 5

칠레와 볼리비아 평화우호조약, 1904년 10월 20일

1884년 4월 4일 휴전 협정 8조에 명시된 목적 수행을 위해 볼리비아공화국과 칠레공화국은 평화와 우호조약을 공표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해 전권대사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볼리비아공화국 대통령, 돈 알바로 구띠에레스, 주 칠레 볼리비아의 특명 공사와 전권공사, 칠레 공화국 대통령, 돈 에밀리오 베요 꼬데시도, 외무부 장관은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1조 볼리비아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간의 평화와 우호 관계는 회복되었으며 그러므로 휴전협정으로 세워진 상태는 종료된다.

2조 1884년 4월 4일 휴전협정에 의해서 칠레가 점거한 영토는 이 협정에 의해서 절대적이고 영구히 칠레의 소유임을 인정한다.

칠레와 볼리비아 간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다음과 같다.

사빨레리 산[1] 정상에서 직선으로 과야게스 산에서 남쪽으로 돌출된 산마루의 정점[2]까지로 대략 위도 22도 54분이다. 그리하여 까혼[3]을 직선으로 지난다. 그 다음 북쪽으로 흐르는 산마루의 분수령으로 후리게스 산[4], 리칸카부르 화산[5], 사이레까부르 산[6], 꾸리깁카 산[7], 부따나나 호르헨갈 화산[8]의 정상이 포함된다. 이 지점으로부터 빠호날 산[9]의 산마루 중 하나를 따라 또꼬르뿌리 산[10] 남쪽 정상으로 직선으로 이어지며 빠니소 산마루[11]의 분수령과 따띠오 산맥[12]으로 이어진다. 린소르 산마루[13]의 분수령과 실라구알라 산[14]의 북쪽으로 이어진다. 아빠가도 화산[15]의 북쪽 정상에서부터 실랄라[16]라고 불리는 작은 산의 산마루를 지나 이나갈리리나 까혼 산[17]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이 지점부터 인까나 바란까네 산[18]의 층군 중간에 보이는 정상까지 직선으로 이어지고 분수령으로는 아스꼬딤이나 하르딘 산[19]까지 북쪽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 산의 정상에서부터 아라랄 산[20]의 정상까지 직선으로 이어지고 오야구에 화산[21] 정상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치빠빠산[22] 정상까지 직선으로 이어져 고포스까산[23] 정상에 이를 때까지 서쪽으로 내려가는 작은 산들의 선으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알콘차산[24]과 만나는 산마루의 분수령이 되고 거기에서 올라화산[25]까지 이어진다. 이 화산에서부터 마유누산[26], 라구나 산[27], 이루뿌툰꾸 화산[28], 보빠달 산[29], 첼라 산[30]의 산맥까지 계속되어 미이리[31]와 후알리카니[32]에 이른다. 여기서부터 까이띠산[33]에서 나빠산[34] 분수령으로 이어진다. 나빠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우아리아산[36]의 동쪽 정상의 지점[35]까지 직선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명명된 산으로 직선으로 이어져 라구나 산맥[37], 우아리아뿌툰꾸 산[39]까지 이어지고 시이이까[40]의 최동단 정상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북서쪽으로 나 있는 빠가산[41] 정상까지 이른다. 빠가산에서부터 프리리틀산[42]의 정점까지 직선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차야코요산[43]까지 직선으로 이어지고 비야코요의 정면에 있는 사까야 계곡[44]의 좁은 부분까지 이어진다. 국경은 사까야에서부터 쿠에바 콜로라다[45]와 산따이레[46]의 정상까지 직선으로 이어지고 거기서부터 이루뿌툰꾸산[47]과 빠따리니산[48]의 북서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부터 국경은 치아르코요산[49]로 직선으로 이어지고 칸고사강[50]을 지나 뽀따뽀따니산[51] 정상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이 산에서 끼우리산[52], 뿌미리산[53], 빠나따야산[54]까지 이어진다. 빠나따야 정상에서부터 차빠와 린꼬나다 사이 중간인 토라빠체따[55]까지 직선으로 이어지고 여기서부터 우이아야[56]을 지나 직선으로 이어져 라까따야산[57]과 사리뜨랄산[58] 정상을 지난다. 북쪽으로 향해 꼬이빠사의 솔트플랙에 있는 따빠코요산[59]과 깨야가[60]의 경계 표지까지 직선으로 이어져 뿌리에또산[61]으로, 빠시가 평원의 북쪽으로, 돌도산[62], 시까야 경계 지표[63], 차빠익사[64], 까바레이[65], 프레스 고무세스[66], 하마추마[67], 킴

사차따[68], 친치야니[69]까지 이어지고 또도스 산또스강[70]을 가로질러 빠야꼬요산[71]과 까라우아노산[72]까지, 그리고 까나사산[73]과 까쁘따인산[74]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스까야산[75]과 끼우이리산[76]의 분수령까지 가고 끼우이리산의 정상에서 뿌깅띠까산[77]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이 마지막 지점의 북쪽으로 볼리비아와 칠레는 국경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뿌깅띠카 산[77]에서부터 바까야로 이어지는 산맥의 북쪽으로 이어져 라우까강[78]을 가로질러 치리리산[79]까지 직선으로 이어진다. 북쪽으로 하뿌파스[80], 김사차따산[81], 탐보 깨마도 빠스[82], 끼시끼시니산[83], 우아꼬요 빠스[84], 빠야차따산 정상[85, 86]과 라란가우아산[87], 그리고 까시리 빠스[88]까지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사하마강과 아추따 강을 까빠나 강과 나누는 곤도리리산[89]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산에서 갈라져 나와 까르비리산[91]으로 이어지고 아추따 빠스[90]를 지난다. 까르비리산에서 까우께나강이나 꼬사빠야[92]강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까우께나와 꼬사빠야 강의 바닥에서부터 꼬사빠야 농장 초원의 출구와 만나는 지점[93]까지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비스비리산[94]으로 직선으로 이어진다. 비스비리산에서부터 이 강과 마우레인의 북서쪽에서 10km 떨어진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또 다른 강의 합류점의 북서쪽인 마우레의 북쪽 보호구역[95]으로 직선으로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져 치빠산이나 또라꼬요산[96]의 경계 표지까지가 국경의 마지막 지점이다. 6개월 이내에 이 조약의 비준안에서 체결국은 이 조항에서 열거된 국경을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술자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임명한다. 국경 지점은 이 조약의 첨부된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양국 외무부 간 특별 합의에 따라 합의된 기관과 절차를 따른다. 국경 표시 작업을 하는 기술자 간의 의견 충돌이 생겨 체결국 정부의 직접 행동으로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이 조약의 12조 규정에 따라 독일제국의 황제의 결정에 따른다. 체결국은 이 조약에 의해서 주권이 정해지는 영토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원주민과 외국인의 개인적 권리를 존중한다.

3조 체결국 간 정치적, 상업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아리카 항구와 라빠스 고원을 철도로 연결할 것에 합의한다. 철도는 조약의 비준으로부터 1년 이내에 칠레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서 건설한다.

볼리비아 국경 내의 철도 소유는 철도 완공일로부터 15년 만료 기간 후 볼리비아에 귀속된다.

같은 목적으로 볼리비아가 철도 건설을 위해 투자하는 자본의 5%까지 보장을 통해서 볼리비아가 발생시키는 의무를 칠레는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철도 건설은 30년 기간 내에 시작된다. 철도 건설은 우유니부터 뽀또시, 오루로부터 라빠스, 꼬차바른바를 지나 오루로부터 산따 꾸르스, 라빠스부터 베니 지역, 수끄레와 라구니야스를 지나 뽀또시부터 산따 꾸르스까지이다.

칠레가 지불하는 금액은 매년 10만 파운드를 넘지 않거나 총 170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금액은 아리카부터 라빠스까지 철도를 건설하는데 있어 볼리비아 측의 철도 건설에 투자할 금액의 최대치이다. 이는 위에 명시된 듯이 30년을 완료로 무효가 된다. 아리카에서 라빠스까지 건설되는 철도에서 칠레 정부의 보증으로 건설되는 다른 철도뿐만 아니라 볼리비아 측의 철도 건설은 양국 정부의 특별 합의 문제이다. 특별 합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상업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된다. 상기한 부분의 가치는 철도 건설을 위한 계약으로 수용되는 입찰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4조 칠레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에 30만 파운드 현금을 15만 파운드씩 나누어 전달할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지급은 협정 기준을 교환 한 후 6개월 내에 이루어 져야 하며 두 번째 지급은 첫 번째 지급이 이루어진 후 1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5조 칠레공화국은 우안차까, 오루로, 꼬로꼬로의 광산 기업을 위한 보상금과 1867년 1년간 칠레에서 발생한 대출의 지불 잔액을 위해 볼리비아가 승인한 융자금의 최종 취소를 충당한다. 지불금은 현금이나 지불일자의 외채 채권의 런던 가격으로 선택해서 지불할 수 있으며 총 금액은 450만 금페소 18펜스이다. 볼리비아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융자금의 취소를 위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총 2백만 금페소 18펜스이다. 1872년 7월 계약에 따라 메히요네스와 까라폴레스까지 건설되는 철도 건설을 위한 대출, 전자의 권리 대리인으로 메스르스 말소쁘 기업을 대표해서 돈 빠드로 로빠스 감마 앞으로 발행된 대출, 1876년 3월 20일 계약에 따라 또꼬의 질산염 지대를 대여해 발생한 에드워드 스키레를 대표해서 돈 존 G. 메이그스 앞으로 발행된 대출, 마지막으로 돈 후안 가르데이 앞으로 받은 총액이 채권으로 발행되었다.

6조 칠레공화국은 볼리비아가 상업적 운송을 위해서 칠레 영토와 태평양 항구를 자유롭게 영구히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양국 정부는 상기된 목표인 각국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고 이를 보장하는데 적절한 방안과 관련한 특별 합의를 할 것에 동의한다.

7조 볼리비아공화국은 통상을 위해 지정된 항구에 관세청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재로서는 볼리비아의 통상을 위해 안또빠가스따 항구와 아리가 항구를 의미한다.

관세청은 항구에서 직접 철도 역으로 옮겨져 볼리비아 세관으로 운송되는 상품을 관장한다. 상품은 화물기차에 밀봉되어 운송 일정, 화물 개수와 중량, 내용물을 명시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8조 체결국이 특별 통상조약을 맺기로 합의하기 전까지 양국간의 상거래는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률에 규제를 받는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 국가의 상품이 제 3국의 상품에 비해 열등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러므로 칠레의 천연재나 제조 상품과 볼리비아의 상품은 상대국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양국이 제 3국에 제공하는 특혜, 면제, 특권에 관해서는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체결국이 서로 각국의 영토를 지나는 철도에 관련해서 상대국의 제품에 대해 같은 요금을 최혜국의 조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

9조 칠레의 천연재와 제조 상품, 국영 상품이 볼리비아로 운송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사 송장과 7조에서 명시한 운송 일정에 따라 발송된다. 모든 종류의 가축과 가격이 낮은 천연재는 형식상의 절차 없이 세관에서 작성된 단순한 화물 목록으로 발송된다.

10조 외국으로 운송되는 볼리비아의 천연재와 제조 상품은 볼리비아 세관이나 세관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발급한 일정에 따라 수출된다. 수출 일정은 각각의 항구의 관세청으로 전송되고 수출 상품은 다른 형식상의 절차 없이 선박에 싣는다. 아리가 항구에서 수입은 안또빠가스따 항구에서의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앞서 언급된 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아리가 항구에서 운송 일정은 같은 요건으로 전달된다.

11조 볼리비아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시행할 수 없기에 안또빠가스따 항구에 설치된 현재 시스템을 1년 동안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아리가 항구까지 확장되어 상기된 방식으로 무역을 규제할 수 있을 때까지 볼리비아의

평가 일정에 맞춰 적절한 조건으로 실행된다.

12조 이 조약의 해석과 시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독일 황제의 중재를 요청한다.

이 조약의 비준안은 6개월 이내에 라빠스에서 교환된다.

이 조약은 1904년 10월 20일 산티아고에서 칠레 외무부 장관, 볼리비아의 특명전권공사의 입회 하에 체결되었으며 밀봉되었고 평화와 우호조약의 사본도 밀봉되었다.

서명

알베르토 구띠에레스

에밀리오 베요 꼬데시도

부속서 6

1920년 1월 10일 보충협약 회의록

까를로스 구띠에레스 외무부장관과 에밀리오 베요 특명전권공사는 볼리비아 외무부에서 다시 만나 높은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가지는 것에 동의했다. 이 회의는 정치적 관계와 무역 관계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합의를 통해 양국 간의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며 양국의 이익과 서로의 요구에 대한 균형을 고려한다.

칠레 장관은 칠레 정부의 일원으로 볼리비아에 파견되어 영광스러운 임무를 가지고 볼리비아 외무부장관에게 칠레 측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즉 볼리비아와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뜻이 높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하고 칠레 장관은 지난 9월 다릭 구띠에레스에게 제출한 조건을 반복하며 볼리비아가 자국만의 태평양 출구를 획득하고자 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1904년 10월 20일에 체결한 평화와 우호조약의 조항으로 명확하게 합의가 된 상황과는 별개이다.

칠레 정부의 권한을 받아 온 칠레 대표는 볼리비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핵심 요소나 제안 사항을 제안하고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I. 1904년 10월 20일 칠레와 볼리비아 간에 체결된 평화와 우호조약은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를 규명했으며 1879년 전쟁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했다.

II. 칠레는 앞서 언급한 조약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해왔고 이런 협상의 본질은 따고나와 아리카 지역을 칠레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볼리비아는 끝까지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III. 볼리비아는 자국만의 항구 소유에 대한 염원은 아리카 항구와 엘 알토, 라빠스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과 칠레가 이행할 다른 의무로 대체되었다.

IV. 칠레는 1904년 조약으로 형성된 현 상황, 지역의 이해관계, 그리고 북쪽 국경 보장 문제를 위해 해안선의 필수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탄탄한 근거로 양국간의 미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칠레는 안곤 협상에서 국민투

표의 대상이 된 영토에 건설된 철도 뿐만 아니라 아리카의 북쪽 영토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볼리비아 자국만의 해안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V. 1904년 평화와 우호조약으로 규정된 조항들과는 별개로 칠레는 국민투표에서 칠레의 승리를 조건으로 이웃 국가의 요구를 성취하고자 새로운 협상을 수용했다.

VI. 이전 합의는 상업적 배상이나 다른 종류의 배상 뿐만 아니라 칠레와 볼리비아 각각의 소유로 남게 될 아리카와 따끄나 지역 간의 국경을 결정한다.

VII.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볼리비아는 칠레와의 외교적인 영향력을 함께 행사해 따끄나와 아리카 지역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 칠레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위 조약은 1920년 1월 10일 라빠스에서 볼리비아의 외무부 장관과 칠레의 특명전권공사가 참가해 1회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록으로 남기는 것에 합의했다. 현 회의록은 두 개의 사본을 포함한다.

서명

까를로스 구띠에레스

에밀리오 베요 꼬데시도

부속서 7

켈로그 미국무장관 제안서 1926년 11월 30일

국무장관직을 맡은 이래로 따끄나-아리카 분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지난 40년간 이전 국무장관들은 문제의 다양한 단계에서 큰 이익을 좇았고 여러 국무장관들이, 특히 나의 선임인 휴즈 장관은, 지금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관련된 일을 찾고자 했다.

[...]

V. 고려해 보기를 제안했던 협상과정에서 형식과는 상관없이 세가지 해결책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한 가지는 칠레와 페루가 만나는 것이다. “통로”가 있는 영토 분할이나 “자유도시”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경과 관련된 세부사항 논의가 수반 되어야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는다. 영토의 중립화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양국이 지지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안곤 조약 3조에 따른 절차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양국은 근거를 들어 영토분할에 합의하지 않았다. 영토 일부나 전체에 대한 중립화에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 칠레와 페루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리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a. 칠레공화국과 페루공화국은 공동으로 혹은 다양한 수단을 자발적으로 이용해서 볼리비아 공화국에 아리카와 따

고나 지역에 대한 이익, 소유권, 권리를 영구적으로 양도한다. 양도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재산권은 차별 없이 지켜져야 한다.

[...]

프랭크 B. 켈로그

1926년 11월 30일

부속서 8

플랭크 B. 켈로그 미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호르헤 마떼 칠레 수상의 제안서, 1926년 12월 4일

칠레 정부는 따그나와 아리가 지역에 분쟁과 관련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 미국부장관의 훌륭한 제안서를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 선행 사건과 관련해 칠레 정부는 간략하지만 중요한 역사적, 외교적 단계를 상기하고자 한다.

[...]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칠레정부는 볼리비아 측에 항구와 영토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생각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칠레 정부가 수용한 제안은 페루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페루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칠레 정부는 안곤 조약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칠레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지켜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 의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은 안곤 협정 3조에 명시된 방법을 적용하고 중재자의 결정으로 확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칠레와 페루 간 최종적인 영토 소유는 이러한 조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칠레 정부는 볼리비아의 요구를 고려할 것이라 선언한다.

미 국무부의 제안은 칠레 정부가 관대하게 할 수 있는 양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제안서는 볼리비아 공화국에 분쟁 중인 영토를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무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이 해결책은 분쟁 국가들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볼리비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칠레 정부가 계속적으로 보여준 태도와도 일치한다. 정식 조약에 의해서 40년간 칠레에 통합된 영토를 양도하는 것과 권리를 희생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법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만을 통해서 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국민투표에서 칠레 민중의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는 분명하다.

칠레 정부는 한 번도 안곤 조약과 중재 판정에 의해 주어진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방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메리카 대륙의 대의를 존중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국가 간의 화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칠레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제안에 열려 있고 동시에 제안으로 초래되는 한 국가의 적법한 권리가 희생될 경우 상응하는 보상을 제안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칠레는 이러한 제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권리를 버리지 않고 상위의 국가적이고 대륙적인 이익을 위해 권리를 자발적으로 희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면에서 칠레 정부는 원칙적으로 제안을 고려할 것에 합의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와 우호 라는 목표를 새롭고 힘있게 보여줄 것이다.

[...]

이번 제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상 과정에서 칠레는 상기한 최종적인 형식으로 논평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다른 국가가 제시하는 제안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국무부의 제안과 다른

국가가 제시하는 제안을 고려할 것이다. 이는 아메리카 국가 간 평화와 단결을 보장하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칠레 정부도 동의한다.

1926년 12월 4일, 산티아고

서명

호르헤 마떼

칠레 외무부 장관

부속서 9

볼리비아 대사 문서 529/21호, 1950년 6월 1일

산티아고, 1950년 6월 1일

장관:

칠레공화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볼리비아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양국의 사법부에서 비준되지 않은 1895년 5월 18일 조약과 1920년 1월 10일 법령에서 볼리비아에게 해양 접근권을 양도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후 1920년 11월 1일 볼리비아 측이 제기한 주장의 경우 국제연맹 1차 회의에서 칠레 대표로 참여한 아구스틴 에드아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볼리비아는 직접적이고 합의된 교섭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 칠레는 볼리비아 측에 교섭의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또한 볼리비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최선책을 볼리비아와 직접 논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칠레는 우호 관계를 원한다. 볼리비아와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은 칠레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웃 국가가 번영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22년 칠레 국회에서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칠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박애와 화합의 환경에서 칠레가 적법한 권리를 고려하고 볼리비아의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해져야 한다.”

1923년 2월 6일 루이스 이스끼에르도 칠레 외무부장관은 리카르도 하이메스 프레이레 볼리비아 장관에게 전달한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칠레 정부는 화해와 형평성의 정신을 듣고자 하는 목적을 견지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정부가 볼리비아의 상황을 고려해 평화 조약을 변경하지 않고 칠레 영토의 지속성을 방해하지 않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제출하려는 제안을 듣고자 한다.”

한편, 프랭크 B. 켈로그 미 국무부 장관이 칠레와 페루 측에 따고나와 아리카 지역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볼리비아에 양도하라는 제안과 관련해서 호르헤 마떼 칠레 외무부장관은 “칠레 정부는 볼리비아 측에 영토의 일부와 항구를 양도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원칙적으로 제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받아들였다.

가브리엘 곤살레스 비델라 칠레 공화국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유사한 성향을 보여주었다. 1946년 11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아니세토 솔라레스 외무부장관과 가진 대화에서 그리고 이후 볼리비아 전대통령과의 회의에서, 1949년 12월 산티아고에 엘리게 에르뜨소그 현재 주 스페인 대사와 만남에서, 그리고 여러 번의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처럼 칠레공화국의 분명한 정책적 방향을 알 수 있는 여러 선례로 볼리비아와 칠레 정부에 볼리비아의 해양 주권 획득에 대해 정식으로 직접 교섭에 착수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는 양국의 진정한 이익과 상호 혜택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을 해결한다.

정부가 이 제안을 수용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볼리비아와 칠레의 미래의 가능성을 위한 일을 시작하며 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알베르토 오스뜨리아 구띠에레스

부속서 10

칠레 외무부 문서 9호, 1950년 6월 20일

칠레 공화국

외무부

외교부

기밀문서

N°9

산티아고, 1950년 6월 20일

각하:

6월 1일 각하의 문서를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문서에서 볼리비아의 해양 주권 획득 요구에 대한 칠레의 국제 정책의 방향이 언급되어 있었고 1895년 5월 18일과 1920년 1월 10일 체결되었지만 사법부에서 비준되지 않은 조약과 법안의 조건을 상기되었습니다. 또한 1920년 아우구스틴 에드워즈스 대통령이 국제연맹 회의에서 한 연설, 2년 후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공화국 대통령이 한 연설, 그리고 1923년 루이스 이스끼에르도 외무부 장관이 한 연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칠레와 페루가 볼리비아에게 따끄나와 아리가 지역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는 켈로그 미국무장관의 제안에 대한 호르헤 마떼의 응답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대통령과 아니세토 솔라레스 전외무부 장관은 가브리엘 곤살레스 비델라 현 칠레 공화국 대통령이 볼리비아의 요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전례에서 각하께서는 저에게 “볼리비아와 칠레 정부에 볼리비아의 해양 주권 획득에 대해 정식으로 직접 교섭에 착수하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는 양국의 진정한 이익과 상호 혜택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서에 있는 인용구에서 칠레 정부는 1904년 평화 협정에서 규정한 법적 상황을 보호하면서 볼리비아와의 직접 교섭, 볼리비아의 요구와 칠레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외무부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일치하도록 일을 진행할 것임을 표명하고자 하며 볼리비아와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태평양 해양 주권을 양도할 수 있고 칠레를 위해서는 칠레의 이익을 고려해 비영토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직접 교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양국 정부는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며 진정한 아메리카 대륙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칠레는 페루 정부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의해야 함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오라시오 와케르 라라인

칠레 외무부 장관

부속서 11

칠레 제안서, 1961년 7월 10일

(마누엘 드루고 대사)

1.- 칠레는 1904년 체결된 평화 협정에서 규정된 법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볼리비아의 요구와 칠레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볼리비아와 직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해왔다. 칠레는 볼리비아의 목적에 대해 양국 간 직접 교섭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조약에서 규정되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관에 의존하는 것을 항상 거부할 것이다.

2.- 1950년 6월 20일 산티아고에서 작성된 문서 N°9 가 앞서 말한 목적의 분명한 증거이다. 이를 통해서 칠레는 “가능한 빨리 볼리비아의 태평양 해양 주권 획득을 위해 직접 교섭을 착수하는데 동의하고 보상에 대해 양국에게 혜택과 이익이 되는 것으로 고려한다”라고 의사를 표명했다.

3.- 빠스 에스텐소로 대통령은 칠레 대통령의 초청에 응답해 알레산드리 대통령을 방문하고자 뜻을 표명했다. 특히 이는 양국에서 볼리비아 정부가 칠레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제 기구에 호소함으로써 여론을 흔들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1961년 7월 10일

라빠스

부속서 12

볼리비아와 칠레 차라나 공동 선언

1975년 2월 8일

1.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가르떼 칠레 공화국 대통령의 주도로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 볼리비아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볼리비아와 칠레의 국경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양국간의 분쟁 지역에 대한 관점을 교류하기 위함이다.

2.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칠레와 볼리비아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관계의 상태를 반영하고 양국의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합의의 초점을 규명할 수 있었다.

3. 이런 점에서 양국의 대통령은 아야쿠초 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함을 재확인했다. 이는 아메리카를 이해하기 위한 연대와 개방의 정신이 충분히 반영된 선언이다.

4. 양국 정상은 건설적인 의도와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내륙국의 상태가 볼리비아에 미치는 영향처럼 양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볼리비아와 칠레 국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고려해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결정했다.

5. 양국 대통령은 화합과 이해의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을 결정했고 그로써 협력의 분위기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보았다.

6. 양국 대통령은 이 합동 선언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양국의 대사급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결정

했다.

1975년 2월 8일, 차라냐,

서명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가르떼

칠레 공화국 대통령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

볼리비아공화국 대통령

부속서 13

칠레 외무부 장관 문서 686호, 1975년 12월 19일

N°686

1975년 12월 19일, 산띠아고

대사님께,

올해 12월 16일 일자의 문서 N°681/108/75를 수령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 진보한 볼리비아 정부는 칠레 정부의 제안서의 전반적인 조건을 수용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제안서는 지난 8월 26일의 외교 제안서를 통해서 제시되었으며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한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

[...]

4. 대통령의 요청에 관련해서 이 문서에서 상호적으로 편리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협상 지침에 대해 칠레 정부가 응답하고자 하는 조건을 재확인한다.

a) 이 회신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삭제하지 않고 현실을 고려하기 위해 H.E. 반세르 대통령의 성명을 전달한다.

b) 이를 근거로 칠레의 응답은 1904년 10월 20일 칠레와 볼리비아 간에 체결된 평화, 우호, 통상 조약의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양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상호적으로 편리한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c) 반세르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볼리비아의 영토와 연결된 해양주권 양도는 동일한 주권이 있는 영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고려할 것이다.

d) 칠레는 볼리비아에 아래와 같은 경계로 아리카 지역의 북쪽 영토 일부 양도에 대해 협상할 의지가 있다.

북쪽 국경: 현재 페루와 칠레 국경

남쪽 국경: 가이나소스 협곡과 유따강 북쪽의 협곡 상부

[아리카에서 땀보 계마도로 이어지는 A-15 도로는 전적으로 칠레 영토가 됨]부터 뿌끼오스역의 남부 지점까지, 그리고 나사우엔또산의 꼬따 5370를 직선으로 통과해 현재 칠레와 볼리비아의 국제적 국경까지 이어짐

지역: 상기된 육지 영토와 해안의 양쪽 끝지점 위도 사이의 해양 영토를 포함해 양도가 이루어진다. [영해, 경제 구역, 대륙붕]

e) 칠레 정부는 남쪽 국경 영토 양도를 수용할 수 없어 거부했고 이는 칠레의 영토 연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f) d에서 설명했듯이 볼리비아로 영토를 양도하는 것은 영토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조건에 따른다. 즉 칠레는 볼리비아에 양도하는 영토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

칠레가 볼리비아로부터 받는 영토는 국경지역의 영토로 통합될 것이다.

칠레와 볼리비아 간의 새로운 정치적-국제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국경혼합위원회를 재설립해 국경지대를 검토하고, 양국 정부에 국경과 관련한 제안서를 쓰고, 거주지역으로 이루어진 영토를 양도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g) 양도되는 지역의 설비와 공공 건물은 양도 받는 국가의 소유로 되며 합의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차카유따 공항, 아리카부터 비시리까지의 철도 등)

h) 볼리비아와 칠레 정부는 합의 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각각의 주권 영토에서 획득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i) 볼리비아 정부는 칠레가 라우카 강의 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j) 칠레가 양도하는 영토는 비무장지대로 정해지고 사전 협의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양도된 영토의 불가침성에 대한 미주기구의 명시적 보증을 얻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k) 양국 정부는 양도 받는 영토를 제 3국과 교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l) 최종 합의에 도달해서 해양 주권을 허용하는 영토 양도는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책임을 보여주는 문서를 남긴다.

m) 볼리비아는 1929년 6월 3일 칠레와 페루 간의 조약으로 성립된 페루의 지역권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n) 이 합의의 효력은 상기한 조약의 추가의정서 1조에 따라 페루의 사전 합의를 조건으로 한다.

5. 1975년 12월 16일자의 문서 N°681/108/75를 통해 진보한 볼리비아 정부가 칠레 정부의 조건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같은 날 칠레 정부는 앞선 단락에서 언급된 페루의 대의권을 공식화 하고자 한다.

[...]

서명

빠뜨리시오 까르바할 뿌라도

외무부 장관

부속서 14

페루 외무부 성명 30-76호

1. 여론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칠레 정부는 1975년 12월 19일 문서 N°685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가 내륙국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했음을 페루 정부에게 알렸다. 1929년 리마 조약의 추가 협정 1조에 의거해 아리카 지역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국에게 양도할 경우 페루와 칠레 간의 선결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페루 정부에게 이 제안서가 발송되었다.

2. 이 복잡한 문제를 연구할 목적으로 1975년 12월 26일자로 최고 권위의 결의안 0720에 의해서 육군혁명정부가 임명되었고 이는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페루 주도로 어렵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대화가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4. 상기된 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대화 결과를 평가한 후 페루 정부는 칠레 정부에게 제안서를 작성해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제안서는 페루 정부의 특별 대표인 루이스 마르찬드 스펜스 대사가 칠레 산티아고로 가서 직접 외무부의 사무국장을 통해서 칠레 수상에게 전달된다. 이 제안서는 페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페루가 국제 조약에 따라 아리카 지역에 대해 가지는 특별한 권리를 지키고 따그나와 아리카 사이 차단되지 않은 사회경제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5. 페루의 통합주의적 소명과 일치하는 이 제안서는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과 관련해

1974년 12월 3일 아야쿠초 선언에서 명시된 것에 따라 페루가 가져야 하는 포용 정신을 되살린다.

6. 이를 기반으로 페루가 칠레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제안서는 페루, 볼리비아, 칠레의 이익을 종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볼리비아와 칠레의 국경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인 리네아 데라 곤고르디아와 평행한 아리카 북부를 통해 볼리비아가 해양 주권의 통로를 양도받는 것은 따고나시와 아리카 항구를 통합하는 지역에서 팬아메리칸 하이웨이에 다다른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가 이루어진다.

b) 페루, 볼리비아, 칠레가 주권을 공유하는 아리카 지역은 리네아 데라 곤고르디아와 아리카시의 북부지역과 태평양의 해안 지역을 잇는 팬아메리칸 하이웨이 사이 페루와 칠레 국경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7. 페루 제안서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6번 b에서 명시된 선결조건은 다음의 필요조건을 따른다.

a) 아리카 항구에 3개국의 항만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b) 볼리비아의 내륙국 지위에 대한 최종적이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 페루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볼리비아가 온전한 주권을 가진 항구를 건설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볼리비아가 자국만의 항구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c) 주권을 공유하는 해안의 인접한 바다에 대한 볼리비아의 주권을 인정한다.

d) 주권을 공유하는 영토에는 3개국의 경제개발 구역을 설치해 다자간신용조직이 재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8. 결과적으로 칠레에게 전달하는 페루 정부 제안서는 1929년 조약의 추가의정서 1조에 의거한 것이며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함이다.

9. 페루의 제안서는 1929년 리마 조약과 추가의정서의 보류중인 조항의 온전한 이행을 포함하고 페루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정한 협정을 존중할 것을 보장한다.

10. 양국 간 상황과 관련한 접근법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은 볼리비아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로 기록된다. 볼리비아의 해양 문제에 관련해 페루의 노력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페루, 볼리비아, 칠레 정부와 국민 간의 평화, 우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국가의 발전을 장려하고자 연대 행동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각국의 국민들의 웰빙에도 기여할 것이다.

11. 페루 제안서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칠레가 볼리비아에 양도할 아리카 북쪽 지역에 대한 지도의 사진을 게재한다. 또한 상기한 아리카 지역에서 페루, 볼리비아, 칠레가 공유하는 주권 지역에 대한 위치도 표시되어 있다.

페루의 계획을 종합하자면 페루의 제안은 실행가능성을 보장하는 경제적 요소와 보안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법적인 문제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평화와 현실적인 분위기에 기반해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다.

부속서 15

미주기구 결의 426호, 1979년 10월 31일 채택됨

AG/RES.426[IX-O/79]

볼리비아의 태평양 접근권

[1979년 10월 31일 열린 12회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볼리비아는 적절한 태평양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평한 해결책 모색은 지속적인 반구의 이익에 부합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상기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안정적인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볼리비아의 내륙국 지위의 결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이 문제의 당사국들이 볼리비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해양주권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협상은 참가 국가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통합된 다국적 개발을 위해 항구 지역을 포함하는 것과 영토 보상이 포함되지 않은 볼리비아의 제안서도 고려해야 한다.
2. 다음 총회에서 "볼리비아의 해양 주권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검토한다.

부속서 16

미주기구 결의 686호, 1983년 11월 18일 채택됨

[AG/RES.686[XIII-O/83]

볼리비아 해양주권문제에 대한 보고서

[1983년 11월 18일 열린 7회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총회

총회는 다음을 검토했다.

1979년 10월 31일 결의안 AG/RES.426[IX-O/79], 1980년 11월 27일 결의안 AG/RES.481[X-O/80], 1981년 12월 10일 결의안 AG/RES.560[XI-O/81], 1982년 11월 20일 결의안 AG/RES.602[XII-O/82]은 각각 볼리비아가 적절한 태평양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평한 해결책 모색은 지속적인 반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우호의 정신과 아메리카 통합의 관점으로 앞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공고히 하여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볼리비아 정부의 해양주권 관련 보고서와 미주기구의 결정에 대한 볼리비아와 칠레 정부의 논평, 양국을 고취시킨 건설적인 정신에 주목한다.
2. 아메리카의 우호관계를 위해 볼리비아와 칠레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화해 과정을 시작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을 가르는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볼리비아의 해양 주권과 관련해 서로에게 편리하고, 권리와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3. 양국은 다음 총회에서 “볼리비아의 해양 주권에 대한 보고서”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부속서 17

칠레와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 보도자료, 2000년 2월 22일

1. 볼리비아와 칠레의 외무부는 1999년 6월과 11월 각각 리오 데 자네이로와 아바나에서 시작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2000년 2월 22일 포르투갈 알가르베에서 만났다. 각국 외무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동했다.

2. 외무부는 차후 대화에서 공식화 될 안건을 규명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예외 없이 양자 관계의 중요 안건이 포함되며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해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태도로 임했다.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은 안건 설정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칠레 정부의 인정은 받아야 한다.

3. 양국은 건설적인 의지로 상기된 목적을 위해서 배제 없이 양국을 위한 모든 이해관계 문제를 다루었다.

4. 양국간의 대화는 볼리비아와 칠레의 완전한 통합을 저해하는 차이를 극복하고 할 것이며 양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5. 양국 외무부는 솔직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했고 시작된 대화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음을 재확인했다. 2000년 2월 23일, 라빠스

부속서 18

제 15차 볼리비아-칠레 정치적 협의 메커니즘 회의록 2006년 11월 25일

제15차 볼리비아-칠레 정치적 회담 메커니즘 회의는 2006년 11월 25일 산티아고에서 열렸다. 대표단은 칠레 외무부 장관,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 대사와 볼리비아 외무부 차관과 마우리시오 도르플레르 대사로 구성되었다.

양국 대표단은 양자간 관계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상호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함에 동의했다. 의지를 가지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대표단은 10월 31일 산티아고에서 열린 3차 양자간 안건에 대한 실무단 회의록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대표단은 다음 안건을 제외 없이 검토했다.

1. 상호 신뢰 조성
2. 국경 통합
3. 자유 통관
4. 물리적인 통합
5. 경제 보완
6. 해양 문제
7. 실랄라 수로 및 수자원 문제
8. 빈곤 퇴치

9. 안보 및 국방 협력
10. 불법 마약 거래 대처
11. 교육·과학 및 기술 협력
12. 문화 협력
13. 기타

이런 맥락에서 양국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안건에 주목했다.

[...]

해양 문제

배제 없이 폭넓은 양자간 안건과 관련해 양국 대표단은 해양 문제에 대한 기준을 교환했고 건설적인 태도로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

양국 대표단은 16차 볼리비아-칠레 정치적 회담 메커니즘 회의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합의되는 날짜와 장소에 따라 볼리비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볼리비아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칠레의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

2006년 11월 25일, 산티아고

[판독불가서명] [판독불가서명]

칠레 대표단 볼리비아 대표단

부속서 19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절차를 진정서 (비공식 번역)

국제사법재판소 등록관님께,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정부는 재판소 관할 36[1]조와 40[1]조, 국제사법재판소 절차 규칙 38조에 의거하여 국제사법 재판소에 칠레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시작하는 바입니다.

I. 분쟁

1. 이 진정서는 볼리비아 다민족국가[볼리비아]와 칠레 공화국[칠레]간의 분쟁에 대한 것으로 칠레는 볼리비아에게 온전한 해양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분쟁 사안은 a) 칠레에게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b) 칠레는 상기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c) 칠레는 상기된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있다.
3. 현재 칠레는 이전에 채택한 입장과는 반대로 이번 진정서¹에서 제기한 양국간의 의무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고

¹ 예를 들어, 2001년 11월 8일 칠레 문서 745/183. 2012년 9월 26일 칠레 외무부 장관의 선언에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La Tercera, Canciller Moreno y emplazamiento de Evo Morales: “Entre Chile y Bolivia no hay controversia, sino que hay tratados”, 2012년 9월 26일 <http://www.latercera.com/noticia/politica/2012/09/674-485312-9-canciller-moreno-y-emplazamiento-de-evo-morales-entrechile-y-bolivia-no-hay.shtml>에서 확인 가능함. 제67차 UN총회에서 알프레도 모레노 차르메 칠레 외무부장관 연설[2012년 9월 28일], 문서 UN A/67/PV.15,

부정하고 있다.

4. 볼리비아는 해양주권 협상에 대한 칠레의 의무 거부는 관점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런 차이의 해결책에 대해 협상의 가능성이 차단되어 양국간의 법적 분쟁이 되었고 이에 볼리비아는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바이다.

II.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과 헌 신청서의 허용성

5. 이 사건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은 1948년 4월 30일 체결된 평화적해결에관한미주조약[보고타 협약] 31조에 근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사법재판소 36조 2항에 따르면 각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의 수락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수락 선언을 행한 국가는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그리고 특별한 합의 없이 재판소의 강제 관할에 복종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a) 협약의 해석 b) 국제법에 대한 의문 c)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d)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배상의 종류와 정도에 관련된 문제를 관할한다”

6. 볼리비아와 칠레는 보고타 협약 체결국이다. 볼리비아는 2011년 6월 9일² 보고타 협약을 비준했으며 칠레는 1967년 8월 21일³ 비준했다.

7. 볼리비아와 칠레 양국은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재판소관할의 법률상 귀속된다. 본 진정서는 재판소관할과 절차 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허용성이 충족된다.

III. 사실 진술

8. 절차 규칙 38조 2항에 따르면 신청서를 작성한 국가는 간결하게 사실을 진술해야 하며 본국의 주장과 관련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9. 1825년 8월 6일 볼리비아는 12만km²의 영토와 400km의 태평양 연안에 접근권을 가진 상태로 독립했으며 북쪽으로는 페루와 국경이 맞닿아 있었으며 남쪽으로 위도 25도를 넘어서는 칠레와 국경이 맞닿아 있었다.

10. 1866년 8월 10일 볼리비아와 칠레 간의 국경은 24도로 정해졌고 이 국경은 1874년 8월 6일 협약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칠레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태평양 해안에 대한 볼리비아의 주권을 인정한 바 있다.

11. 1879년 2월 14일 칠레는 “태평양 전쟁”을 주도해 볼리비아의 안토빠가스따 항구를 침략해 군사적으로 점령했고 볼리비아의 해양접근권을 박탈했다. 볼리비아는 내륙국이 되면서 한 세기가 넘도록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12. 볼리비아는 1884년 4월 4일⁴ 칠레의 리토랄 주의 군사 점령이 계속되는 압력 속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했다.

13. 칠레는 볼리비아에게 전적으로 태평양 해양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요구임을 인정했다. 그리하여 1895년 5월 18일 볼리비아와 칠레는 산티아고에서 양국 간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여러 조약에 서명했

http://www.minrel.gob.cl/prontus_minrel/site/artic/20120928/pags/20120928164005.php에서 확인 가능함.

²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보고타 협정” 비준서, 2011년 4월 14일, “보고타 협정”의 유보철회서, 2013년 4월 10일 <http://www.oas.org/juridico/english/sigs/a-42.html#Bolivia>에서 확인 가능함

³ 칠레 공화국, 법령 N°526, 1967년 8월 21일, 관보 번호 25837, 1967년 9월호 <http://www.leychile.cl/Navegar?idNorma=400563&buscar=decreto+526>에서 확인 가능함

⁴ 볼리비아 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간의 휴전 협정, 1884년 4월 4일

다.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영토양도조약의 특별 조약⁵이다.

14. 볼리비아의 리토탈 주가 군사 점령 하에 있는 동안 1904년 10월 20일 볼리비아는 칠레와 “평화와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칠레는 점령한 볼리비아 영토⁶를 통치하게 된다. 이 조약은 이전 볼리비아의 해양 주권에 대한 칠레의 선언이나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았다.

15. 1904년 조약 체결 6년 후 페루의 따끄나와 아리카 지역 상황의 불확실성과 볼리비아가 이 영토를 통해서 바다로 접근권을 모색하려 하면서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은 칠레와 페루에 제안서를 보냈고 이는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국가에게도 알려졌다⁷. 이 제안서에는 1904년 조약에 서명할 때부터 칠레가 보여준 기대를 재확인했다. 칠레는 1920년 1월 10일 볼리비아와 체결한 의정서에서 칠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⁸.

16. 이와 다른 약속을 근거로 볼리비아와 칠레는 1950년 6월 1일과 20일에 교환한 문서에 포함된 합의와 관련된 협상에 들어갔다.

17. 1950년 6월 1일 볼리비아 문서에는 칠레의 선언과 약속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볼리비아와 칠레 정부는 볼리비아의 해양주권 획득을 위한 근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그리하여 양국의 이익과 편의를 기반으로 볼리비아의 내륙국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⁹

18. 1950년 6월 20일 이에 대한 칠레의 답변서는 다음과 같다. “[...] 칠레정부는 [...] 볼리비아에 해양 주권을 부여하는 가능한 방법과 칠레는 비영토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교섭에 들어갈 의지가 있다.”¹⁰

19. 이 합의 내용은 1961년 7월 10일 칠레 대사관이 볼리비아 외무부에 보낸 제안서를 통해서 재확인된다.¹¹

20. 1975년 2월 8일 볼리비아와 칠레 대통령은 차라냐 합동 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의 4번째 내용은 상호 이해와 건설적인 태도로 양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즉 볼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내륙국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대화를 지속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¹².

21. 차라냐 협상 과정에서 1975년 12월 19일 문서를 통해 칠레는 “아리카 북부부터 리네아 데라 곤꼬르디아까지의 영토를 볼리비아에 양도할 것에 대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다.¹³.

22. 1986년 양국간의 대화가 재개되면서 볼리비아는 해양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한참 후인 1987년 6월 9일 칠레는 볼리비아에게 적절하고 주권적인 태평양 접근권 부여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고 칠레가 한 이전의 선언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⁵ 볼리비아와 칠레 간의 영토양도조약, 1895년 5월 18일. 이 조약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볼리비아의 향후 발전과 상업적 번영을 위해서 자유로운 바다로의 접근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조약은 국민투표나 직접 교섭을 통해서 칠레가 따끄나와 아리카 지역의 영구적인 주권을 획득한다면 볼리비아 공화국에 그 영토를 양도하기로 약속한다. 여기서 칠레의 통치권 하에 남을 깨브라다 데 까마로네스부터 깨브라다 데 비도르 지역을 제외한다. 또한 이 조약은 칠레가 상기된 지역에 대한 주권을 획득할 수 없다면 “칼레타 데 비도르에서 깨브라다 데 까마로네스 지역이나 이에 상응하는 지역을 볼리비아에 양도하기로 약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⁶ 볼리비아와 칠레간의 평화와 우호조약, 1904년 10월 20일

⁷ 다니엘 산체스 부스타만페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의 제안서는 페루와 칠레 공화국으로 전달되었다. 1910년 4월 22일

⁸ 카를로스 구띠에레스 볼리비아 외무부 장관이자 특명전권공사와 에밀리오 베요 꼬데시도 칠레 장관이 서명한 의정서, 1920년 1월 10일

⁹ 볼리비아 문서, 1950년 6월 1일

¹⁰ 칠레 문서, 1950년 6월 20일

¹¹ 칠레 제안서, 1961년 7월 10일

¹² 볼리비아와 칠레의 차라냐 합동 선언, 1975년 2월 8일

¹³ 칠레 문서, 1975년 12월 19일

23. 마지막으로 1979년 9차 미주기구 총회에서 결의안 426을 채택해 볼리비아가 해양 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공평한 해결책 모색은 반구의 이익에 부합함을 강조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는 볼리비아에게 해양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¹⁴.”

24. 1979년 결의안 426에서 명시한 전반적인 반구의 의지는 10년 후 또 다른 결의안에서 확인되었다¹⁵. 그리하여 볼리비아 해양주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총회 의제로 계속 다룰 것을 결정했다. 특히 1983년 결의안 686에서는 볼리비아와 칠레가 “모든 이해 당사국의 상호적인 편의와 권리를 고려해 볼리비아에게 태평양 출구를 부여할 해결책¹⁶”을 찾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25. 2000년 2월 22일 국제포럼에서 볼리비아의 요구에 대해 볼리비아와 칠레의 외무부 장관은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의 두 번째 내용에서 배제 없이 양자간 관계에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는 의제를 모으는데 합의했다. 2000년 9월 1일 양국의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26. 2006년 7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정부는 각각 “해양 문제”를 6번째 의제¹⁷로 포함한 “13개 의제”에 합의했다. 22차 볼리비아-칠레 정치적 회담 메커니즘 회의[2010년 7월 12~14일]에서 양국은 양자간 대화는 “해양 문제¹⁸”라고 명시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2010년 11월 회의가 계획되었지만 칠레 측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기했다. 이후 협상은 재개되지 않았다.

27. 2011년 2월 볼리비아 대통령은 칠레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볼리비아의 내륙국¹⁹ 상황을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제안서를 요청했다. 칠레는 이러한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볼리비아는 칠레에 속한 영토를 통해서 태평양 접근권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언급했다²⁰.

28. 이후 2011년 9월 21일 66차 UN 총회에서 볼리비아 대통령은 칠레와의 양자간 협상으로 볼리비아의 해양 문

¹⁴ 결의안 No.426, 미주기구 총회, 1979년 10월 31일

<http://www.oas.org/en/sla/docs/ag03793E01.pdf> 에서 확인 가능함

¹⁵ 미주기구 결의안: AG/RES 481 of 27/11/1980; AG/RES 560 of 10/12/1981; AG/RES 602 of 20/11/1982; AG/RES 686 of 18/11/1983; AG/RES 701 of 17/11/1984; AG/RES 766 of 9/12/1985; AG/RES 816 of 15/11/1986; AG/RES 873 of 14/11/1987; AG/RES 930 of 19/11/1988; AG/RES 989 of 18/11/1989.

¹⁶ 결의안 no. 686 미주기구 총회, 1983년 11월 18일, <http://scm.oas.org/pdfs/agres/ag03797E01.PDF> 에서 확인 가능함

¹⁷ 2차 볼리비아-칠레 양자 간 실무단 회의 회의록, 13개 의제, 2006년 7월 17일

¹⁸ 22차 볼리비아-칠레 정치적 회담 메커니즘 회의록, 2010년 7월 14일 http://www.rree.gob.bo/webmre/notasprensa/2010/2010_julio/Acta%20final.pdf에서 확인 가능함

¹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선언, 2011년 2월 17일, Los Tiempos, Evo pide a Chile entregar propuesta marítima hasta el 23 de marzo para debatirla 라고 인용. http://www.lostiempos.com/diario/actualidad/nacional/20110217/evo-pide-a-chile-entregarpropuesta-maritima-hasta-el-23-demarzo-para_113493_224396.html에서 확인 가능함

²⁰ 칠레 외무부 선언, 2011년 7월 12일 http://www.minrel.gob.cl/prontus_minrel/site/artic/20110712/pags/2011_0712144736.php에서 확인 가능함

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²¹. 이에 칠레 대통령은 양국 간의 미결 문제는 없다고 응답했다²².

29. 2012년 9월 67차 UN 총회에서 볼리비아 대통령은 재차 칠레 정부에게 “평화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최종적으로 해양 문제를 해결²³”하고자 요청했다. 칠레 외무부 장관은 이러한 요청을 단언적으로 거부했고 “칠레와 볼리비아 간의 분쟁은 없다²⁴. 볼리비아는 해양 주권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²⁵”라고 언급하며 양국간의 미해결된 분쟁이 없다고 지적했다.

30. 이처럼 칠레는 볼리비아의 온전한 해양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국의 의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할 의도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평화적인 국가인 볼리비아는 현재 칠레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에 명시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볼리비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IV. 볼리비아 요구의 법적 근거

31. 상기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칠레는 합의, 외교적 관행, 여러 차례에 걸친 고위급 인사의 선언을 통해서 볼리비아의 해양 주권에 대한 협상을 약속했다. 칠레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칠레는 이러한 의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V. 중재 요청

32. 상기한 이유에 근거해 볼리비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요청하는 바이다.

- a) 칠레는 볼리비아의 온전한 태평양 접근권 부여와 관련한 합의를 위해 협상할 의무가 있다.
- b) 칠레는 상기한 의무를 위반했다.
- c) 칠레는 볼리비아의 태평양 접근권 부여를 위해 상기한 의무를 합당한 기간 내에 빠르게 공식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3. 볼리비아는 진행과정에서 현재 진정서를 보충하거나, 수정하거나,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4. 현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고 볼리비아는 1909년 10월 20일 체결된 평화와 우호 조약의 12조와 1907년 4월 16일 의정서에 의거해 중재재판소의 설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VI. 임시 재판관

35. 재판소 관할 31[3]조와 국제사법재판소 절차 규칙 35[1]조에 의거해 볼리비아는 임시 재판관을 지정할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²¹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라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대통령 연설, 66차 UN 총회의 13차 본회의 [2011년 9월 21일] 문서UN A/66/PV.13, <http://gadebate.un.org/66/bolivia-plurinational-state>에서 확인 가능함

²² 세바스티안 베네라 에체니게 칠레 대통령 연설, 66차 UN 총회 15차 본회의 [2011년 9월 22일] 문서 UNA/66/PV.15, <http://gadebate.un.org/66/chile>에서 확인 가능함

²³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대통령 연설, 67차 UN총회 11차 본회의 [2012년 9월 26일] 문서 UN N67/PV.11, <http://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2/522/19/pdf/N1252219.pdf?OpenElement> or <http://gadebate.un.org/67/bolivia-plurinational-state>에서 확인 가능함

²⁴ 각주 1번 참조

²⁵ 각주 1번 참조

국제사법재판소 절차 규칙 40조에 의거해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대통령은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벨트세를 이번 소송절차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소통은 주 네덜란드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대사관으로 보내주길 요청한다. [나사울란 5, 2514 JS 헤이그, 네덜란드]

경의를 표하며,

서명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벨트세

대리인

다비드 초깨우안까 세스빠데스

외무부 장관

부속서 20

바다의 날,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연설문 (2014년 3월 23일)

우리 국민이 바다의 날로 기억하는 3월 23일 오늘, 한 세기가 넘도록 평화와 통합, 태평양 해양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온 민중의 투쟁과 저항에 경의를 표합니다.

볼리비아는 로아 강부터 빠보소 강에 이르는 400km 태평양 해안과 12만km² 해양주권을 소유한 독립 국가였습니다. 이 영토에 대한 소유권은 띠와나쿠 문화가 바다까지 영향을 미쳤던 수십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칠레 공화국은 적은 영토를 소유한 독립국으로 생겨나 분명히 오늘날과는 다른 국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칠레 헌법은 칠레의 북부 국경을 아따까마 사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즉 볼리비아의 국경이 시작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는 페루와 칠레 간의 영해 분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칠레는 1818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으며 페루는 1921년 독립했다. 독립의 시기에 페루와 칠레는 이웃 국가가 아니었다. 두 국가 사이에는 차라카스 식민지 국가가 있었으며 이 국가는 1825년 볼리비아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공화국이 설립되고 난 후 1840년까지 외국 기업의 탐욕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는 볼리비아 리토팔 해안에서 구아노와 초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자 바뀌었습니다. 1842년과 1857년 사이 칠레가 보여준 팽창과 침략 행위는 있었지만 칠레는 볼리비아의 해안을 인정하고 있었고 헌법에 국경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1866년 8월 10일 국경 조약을 통해서 볼리비아의 해안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양국간의 국경을 위도 24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년 뒤인 1874년 8월 6일 1866년의 국경을 비준하는 양국 간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칠레의 팽창 정책은 1879년 2월 14일 칠레의 군대가 볼리비아의 안토빠가스따 항구를 침략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칠레는 리토팔 주로 진격했고 거기서부터 갈라마에서 볼리비아의 첫 저항이 있을 때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같은 해 3월 23일 34정의 소총과 카빈총으로 무장한 135명의 용감한 볼리비아 국민은 1,500명 이상의 침략군을 저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바로아는 작지만 용감한 볼리비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떠나라고 하자 그는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볼리비아인이고 여기는 볼리비아이다. 내가 있을 곳이 여기다.”

우리는 볼리비아에서 이 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인이 있는 곳, 심지어 칠레에서도 이 날을 기념합니다. 2007년 4월 10일 미첼 바첼레트 칠레 정부는 또빠떼르 연대에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기념 명판을 설치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바로아는 오늘날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으며 세계의 민중을 위한 고귀한 바다입니다. 아바로아는 민중들은 서로를 침략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침략으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입니다. 권력자들,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외국 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팽창주의자와 식민지주의자들은 우리의 민족과 싸웠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모두가 참혹한 전쟁의 폭력과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되었습니다. 칠레의 과두제 집권층의 야심과 영국의 자본은 볼리비아, 페루, 칠레 세 국가와 싸웠습니다.

2014년 3월 23일은 볼리비아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21세기 초인 오늘날 아메리카 전역에는 다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쟁과 대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역사적인 부정의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중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회복한 민족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민중을 위한 정권에 투표를 하고 민중, 민족, 사회 운동 진영이 선택한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는 어떠한 보호 없이 자국의 역사를 쓰겠다고 결정한 각국 정부의 의지로 평화 지역으로 선언했습니다. 나토(NATO)군이 주권 국가에 개입하는 동안 남미국가연합(UNASUR)은 쿠데타와 여러 종류의 갈등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제국의 시대가 아닌 민중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의 중심부에서 나온 결정이 우리의 자연 자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접 국가와 민중을 공격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민족이 평화적인 공존을, 발전을, 그리고 정의와 같은 공동 가치를 촉진하는 지역통합 계획을 강화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현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민중들 사이에서 부는 평화와 희망의 바람을 맞으며 3월 23일을 기념하지만 그것을 존중하며 분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3월 23일은 특별합니다. 에두아르도 아바로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볼리비아의 요구가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시나리오임을, 국제공동체가 민중의 역사적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만든 시나리오임을 재확인합니다.

볼리비아가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해양주권을 요구한 사실은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역사는 현재 문제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바다. 볼리비아의 해양 주권은 먼저 민중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볼리비아의 바다는 전쟁의 전리품도 군력을 증강해야 하는 이유도 아닌 민중을 위한 것입니다. 평화의 바다가 될 것이며 평화를 장려하는 국가 소유의 바다입니다. 평화적인 국가는 제한적인 바다를 장려할 수 없으며, 개인 소유의 바다를 장려할 수도 없습니다. 평화적인 국가는 모든 민중을 위한 바다를 세계에 제안합니다. 볼리비아의 바다는 우리 시대와 세대의 여성과 남성의 신념과 역량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님을 한 세기가 넘게 괴롭히며 지속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후대에게 민중의 선의와 평화라는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다와 어머니 지구. 어머니 지구는 아따까마 산맥에 있는 아이마라와 우르스처럼 형제 민족 간에 국경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식민지와 공화국 독재자는 원주민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하지만 부가 풍부한 지역에서 살고 일하며 이동하는 수백만 칠레, 페루, 볼리비아 사람들에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구는 항상 바다 접근권이 있었으며 어머니 지구는 바다로부터 나왔습니다.

칠레 민족들의 연대. 지지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칠레 민족이 보여준 태도, 인정, 약속과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칠레 민족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보여주었고 특히 이번 3월 11일 볼리비아에게 해양 주권을 돌려주고 정의롭지 못하게 내륙국이 된 상황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전통, 역사, 문화, 형제애, 그리고 상보성을 공유해온 칠레와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초래된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칠레의 의회, 예술가, 교수, 지식인, 사회 운동, 모든 칠레 민족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볼리비아를 위한 해양 주권에 대해 열렬한 요청과 통합을 지지하는 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칠레 민족에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다로 돌아가기 위한 역사적 권리를 한번도 포기한 적 없는 볼리비아 민족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볼리비아 민족을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볼리비아 민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해양 주권 문제를 지지하며 해야 할 일은 볼리비아가 내륙국으로 견뎌내야 했던 부정의와 관련해서 알리고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우리는 곧 바다를 되찾을 것이며 국가를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존엄성이 있으며 우리의 해양 주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민족과 군인들에게 저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조국이 아니면 죽음이며, 복종하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속서 21

제44차 미주기구 총회에서 다비드 초께우안까 장관 연설문

(아순시온, 2014년 6월 4일)

의장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반갑게 맞아 주신 파라과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외무부장관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주기구 총회 자리 마다 자연 자원, 경제, 주권과 먹거리 안전, 미주기구의 개혁과 같은 우리 지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좋은 자리이며 이번에는 “사회적 통합이 있는 발전”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대통령님과 저명한 참가자 여러분께 우리의 아메리카를, 우리의 아바 알라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서쪽에서 동쪽까지 시공간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포함해 역사의 한 부분의 주체로 보길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총회에 모인 분들이 더 폭넓은 시각으로 긴급한 현안 문제를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래의 시간의 압력과 전통적인 입장의 압력을 피하고 외교적 담론의 수단이기보다는 통합의 수단으로 보길 바랍니다.

아메리카에서 외부인들이 우리의 대륙에 발을 딛기 전에 우리는 단결하여 희망을 가지고 형제처럼 일했습니다. 우리는 개방된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며 영토 문제나 해안 문제는 없었습니다.

식민지가 생겨났고 그와 동시에 국경이 지도 위에 그려졌습니다. 국경은 보통 정복자의 이익, 황제의 욕망, 혹은 왕과 교황의 탐욕에 맞춰 그려졌습니다.

“새로운 영토 질서”가 세워졌으며 이는 대서양 맞은편의 정복자가 독단적으로 분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발견”한 영토로 이전부터 그 영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묻지 않은 채 사용되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식민지 침략은 약 3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는 독립적으로 살았던 시간보다도 깁니다. 식민지 시절 동안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었고 공화국과 국가들이 생겨났을 때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로 국경은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자연자원 착취는 주로 유럽 북부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우리의 민중과 국가간의 평화와 공존이 변했습니다. 외국 자본주의자는 팽창 정책에 착수했으며 지정학적인 이해관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동족상잔 전쟁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와 상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승리만이 권리와 평화를 지배하는 것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갈등 사건에서의 상처도 그러합니다. 국경 협정은 승자가 주도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재판소가 차이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당국은 현재 이런 모든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앞을 내다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에게, 원주민에게, “과거”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말하자면 미래는 과거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처럼 우리의 선조가 앞서서 앞으로 나갑니다. 미래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은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가 무엇을 했는지가 현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길 다지기

그래서 우리의 선조는 오늘날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후대를 위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길을 다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미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지금 미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아이들의 미래에서는 지웁시다

누군가는 역사책에서 전쟁,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전쟁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읽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다른 역사를 읽도록, 전쟁이 없는 역사, 대화의 역사,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의 역사를 읽게 해주어야 합니다. 볼리비아는 우리의 형제국인 칠레에게 함께 앉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즉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지우고 아이들의 미래로부터도 지우자는 것입니다.

칠레와 볼리비아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동의했고 미대륙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1895년부터 영토양도조약으로 볼리비아의 개방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있습니다.

1922년의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1950년 곤살레스 비델라, 1975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칠레 대통령은 칠레와 볼리비아의 외교관들과 만나 태평양 전쟁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80년대 그렇게 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소위 13개 의제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노력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칠레와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일 정의는 온다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설명합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일이 내일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쉽고 논리적이며 분명하지만 시간은 양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대를 이끌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틀린 것을 바로잡아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며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망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의 실수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수행하는 협상이, 우리의 성취가 우리를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즉 정의가 내일에 있는 이유이며 이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시각으로 이번 총회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길을, 약속을, 우리의 공통된 역사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차이를 극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평화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지도자들은 훌륭함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항상 대화를 통해서 편견과 “잘못 규정된” 개념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머니 지구, 바다, 산맥, 사막, 열대 우림, 강과 협곡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바 알라에서 우리에게 차이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외무부 장관, 그리고 오늘 참가하신 대표단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길 바라며 볼리비아와 칠레 간의 논쟁을 이해하고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칠레가 대화에 참가하도록 초대했으며 신념을 가지고 볼리비아가 태평양 해안 주권을 가질 권리를 평화롭고, 의미 있고, 빠르게 풀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께 대화, 합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사진출처

사진 1: Blue Book, Ministry of the Presidency and Foreign Minister, 2004. La Paz, Bolivia.

사진 2: www.davidrumsey.com.

사진 3: Blue Book, Ministry of the Presidency and Foreign Minister, 2004, La Paz, Bolivia.

사진 4: Blue Book, Ministry of the Presidency and Foreign Minister La Paz, Bolivia.

사진 5: Book entitled Historia Grafica de la Guerra del Pacifico, Mariano Baptista Gumucio, 1978, La Paz, Bolivia.

사진 6: www.commonswikimedia.org.

사진 31: www.latercera.com.

사진 32: <http://carlosdmesa.com/>

사진 33: <http://www.galeon.com/>

사진 34: <http://www.minrel.gob.cl/>

사진 35: Odber W. Heffer Bissett (1860 - 1945) – National Museum of History.

사진 36: <http://www.fotografiapatrimonial.cl>

사진 37: <http://www.memoriachilena.cl/>

사진 38: <http://historiapolitica.bcn.cl/>

사진 39: <http://biografia.bcn.cl>.

- 사진 7: Claudio Arce Aguirre Archive.
- 사진 8: Patricio Greve Archive.
- 사진 9: Book entitled Historia Grafica de la Guerra del Pacifico, Mariano Baptista Gumucio, 1978, La Paz, Bolivia.
- 사진 10: Book entitled Historia Grafica de la Guerra del Pacifico, Mariano Baptista Gumucio, 1978, La Paz, Bolivia.
- 사진 11: Book entitled Historia Grafica de la Guerra del Pacifico, Mariano Baptista Gumucio, 1978, La Paz, Bolivia.
- 사진 12: Book entitled Historia Grafica de la Guerra del Pacifico, Mariano Baptista Gumucio, 1978, La Paz, Bolivia.
- 사진 13: www.vicepresidencia.gob.bo.
- 사진 14: www.rree.gob.bo.
- 사진 15: www.democraciadirecta.cl.
- 사진 16: www.indiana.edu.
- 사진 17: www.indiana.edu.
- 사진 18: www.indiana.edu.
- 사진 19: www.biografiasyvidas.com.
- 사진 20: www.reintegracionmaritima.com.
- 사진 21: www.senate.gov.
- 사진 22: Alberto Ostria Guierrez, Guillermo Francovich, 1974, La Paz, Bolivia.
- 사진 23: www.memoriachilena.cl.
- 사진 24: www.emol.com.
- 사진 25: Blue Book, Ministry of the Presidency and Foreign Minister, 2004. La Paz, Bolivia.
- 사진 26: Blue Book, Ministry of the Presidency and Foreign Minister, 2004., La Paz, Bolivia.
- 사진 27: Blue Book, Ministry of the Presidency and Foreign Minister, 2004., La Paz, Bolivia.
- 사진 28: Blue Book, Ministry of the Presidency and Foreign Minister, 2004, La Paz, Bolivia.
- 사진 29: <http://www.eduardo-rodriguez-v.com/>
- 사진 30: EFE Agency.
- 사진 40: Parker, William Belmont. Chileans of to-day.
- 사진 41: <http://historiapolitica.bcn.cl/>
- 사진 42: Chile's Encyclopedia of History No. 12.
- 사진 43: <http://reintegracionmaritima.blogspot.com/>
- 사진 44: Wikimedia Commons.
- 사진 45: <http://www.memoriachilena.cl/>
- 사진 46: <http://www.genealogiachilenaenred.cl/>
- 사진 47: <http://historiapolitica.bcn.cl/>
- 사진 48: <http://hitosdechile.blogspot.com/>
- 사진 49: El Mercurio newspaper.
- 사진 50: <http://historiapolitica.bcn.cl>
- 사진 51: Helen C. Stikkel Archive.
- 사진 52: www.uchile.cl
- 사진 53: Official Picture taken by the Press Department of Chile.
- 사진 54: <http://biografiadechile.cl>
- 사진 55: DIREMAR's Archives.
- 사진 56: www.presidencia.gob.bo
- 사진 57: DIREMAR's Archives.
- 사진 58: www.icj-cij.org
- 사진 59: Bolivian Agency of Information - ABI (acronyms in Spanish), www3.abi.bo/
- 사진 60: DIREMAR's Archives.
- 사진 61: Blue Book, Ministry of the Presidency and Foreign Minister, 2004, La Paz, Bolivia.
- 사진 62: DIREMAR's Archives.
- 사진 63: www.lostiempos.com.
- 사진 64: www.profesorenlinea.cl
- 사진 65: Ricardo Martini Archive.
- 사진 66: Mining Federation of Chile.
- 사진 67: www.la-razon.com
- 사진 68: Elias Munos Archive.
- 사진 69: www.soyarica.cl